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법무법인 (유) 지평

변호사 이소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연구개발기간 : 2024. 6. 1. ~2024. 10. 31.)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1. 11.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자 양 영 태 (인)

연구책임자 : 이소영

연구원 : 이상희

민지홍

전준우

강다영

조영록

허순영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사업명	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100%		%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고도화 방안 연구
위탁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영문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업자등록번호	104-86-17068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법인등록번호	274146-0009145

연구책임자	성명		이소영	직위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직장전화	02-6200-1721	휴대전화	
		전자우편	sylee@jipyong.com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4. 06. 01. - 2024. 10. 31.(5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30,000			30,000		30,000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이소영	직위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직장전화	02-6200-1721	휴대전화	
		전자우편	sylee@jipyong.com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연구책임자: 이 소 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양 영 태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4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5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와 내용 6

제3장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 제재처분 법제 13

1. 미국 14
2. 영국 41
3.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54
4. 일본 73

제4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02

1.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103
2.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106
3.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111
4. 맺음말 122

표목차

<표1>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 ····· 9
<표2> Section 5, 6 of 41 USC 504 (FGCAA) ····· 14
<표3> Section 2, 9 of 41 USC 504 (FGCAA) ····· 16
<표4> CFR Part 200 발췌 ····· 17
<표5> 2024년 R&D 예산에 기초한 연방기관 리스트 ····· 20
<표6> §3729 of FCA ····· 21
<표7> V. Agency Administrative Actions 발췌본 ····· 23
<표8> CFR-2024-title10, §733.3 ····· 25
<표9> CFR-2024-title10, §600.31 ····· 28
<표10> CFR-2023-title42, §93.407 ····· 31
<표11> CFR-2023-title45, §689.2(a) ····· 33
<표12> CFR-2023-title45, §689.3 ····· 34
<표13>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3조 ····· 42
<표14>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 Sanctions ····· 45
<표15>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8.1 ····· 46
<표16>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7.1 ····· 47
<표17>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주체) ····· 48
<표18>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2 ····· 48
<표19>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종류) ····· 49
<표20>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절차) ····· 50
<표21> EU Horizon Europe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발췌 ····· 54
<표22> MGA(모델계약서)의 재정적 제재조항 ····· 67
<표23>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 68
<표24> EU 보조금 계약 이행 가이드라인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 70
<표25> 경쟁연구비 지침(제재처분 사유) ····· 74
<표26> 경쟁연구비 지침(제재처분 기준) ····· 75
<표27> 경쟁연구비 지침(부정사안 공표) ····· 76
<표28>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재처분 절차) ····· 78
<표29>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사례 ····· 100

그림목차

[그림1] 제재처분 절차도 ····· 12
[그림2] UKRI의 조직 구조 ····· 42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과제명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4. 06. 01. - 2024. 10. 31.(5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30,000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외국기관 및 외국인 대상제재 처분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에 참조함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국제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개선	행정제재	
영문핵심어 (5개 이내)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Legislation Reform	Administrative Sanction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4.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 기관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인정하면서,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 및 연구자의 성실하고 투명한 수행을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하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유효적절한 제재처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R&D, 그 중에서도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법제도 체계를 살펴보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제재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혁신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의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제재 제도를 어떻게 개선 또는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 구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근거를 마련한 이후, 2010. 2.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이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 근거 조항 신설, 2014. 5.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2673호)이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처분 감면 조항 신설 하는 등 개정 과정을 거쳐 2021. 1. 1. 제정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확정되었음

○ 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비의 유용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인정시 (i)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ii) 제재부가금 부과, (iii)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환수 가능하고, 연구개발기관 자체 조사 후 보고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조사, 검증한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검토 결과 사전통지, 이의신청 및 재검토 절차를 거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 등을 결정하고 통보함

3.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의 제재처분 법제

가. 미국의 경우

○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및 연방보조금 규정(Uniform Guidance, 2 CFR)이 연방재원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관리,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은 크게 Cooperative agreements 방식과 Grants 방식이 있으며, 수취인에 대한 상당한 관여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연방기관은 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거나 협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법령 및 규정, 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지, 교부 취소, 추가 지원 중단, 지원 종료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자금에 관한 사기 및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 Act)에 따라 부정청구행위당 5,000~10,000 USD 상당의 벌금 및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10 CFR Part 600, DO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s, DOE Specific Guidelines and Enforcement Actions 및 2 CFR Part 200 등에서 연방 보조금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이 중 R&D 보조금 관련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협력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관한 연방규정(CFR-2024-title10, §600.31) 등을 따름
- 위조, 변조, 표절 행위를 제재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연구기록을 수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한 제한, 통제 또는 조건 부여, 인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함
-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협약이나 조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상 구체적인 사유와 사유별 제재 방법, 양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중 보건서비스 정책」(CFR-2023-title42, §93)을 통해 공중보건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받는 기관의 책임, 부정행위의 정의 및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정책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및 표절 행위로 정의되며, 연구기록 수정 또는 철회, 서면 경고, 계약 및 협정 준수를 위한 특별 인증이나 조건 부여, 협약의 보류 또는 종료, 보조금 지급 제한, 추가 요건 부과, 각종 활동에의 참여제한 및 자금 회수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CFR-2023-title42, §93.407),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협약이나 조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상 구체적인 사유와 사유별 제재 방법, 양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립과학재단(Naional Science Foundation)는「연구부정행위 정책」(CFR-2023-title45, §689)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유,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CFR-2023-title45, §689.3)
- 그와 별개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표준서식인 Grant General Conditions 에서 연방 보조금

의 지급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시 연방보조금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종료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방법령, 연방기관의 규정 및 지침, 표준서식 등을 종합하면 (i) 국제공동연구를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 지침 단위에서 다루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ii)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R&D 역시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되, 위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iii) 연방법령은 지원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비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 역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나. 영국의 경우

○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UKRI’) 및 그 산하의 위원회가 분야별 R&D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UKRI는 「The UK Research Innovation fEC Grant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이하 ‘표준 보조금 약관’), 「The UKRI Counter Fraud and Bribery Policy」, 「UKRI Policy and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이하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R&D 관련 부정행위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은 위조, 변조, 표절 행위 외에도 허위 진술, 고의·중과실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등을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표준 보조금 약관상 약관상 의무 불이행, 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액의 20~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비 중복 지원, 허위 청구 등은 사기 행위로 규정함

○ UKRI는 연구기관이 표준 보조금 약관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재정적 제재 및/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액의 20%~100%를 회수할 수 있고, 연구부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지원 철회, 연구비 회수 등을 할 수 있음

○ UKRI는 영국과 해외 과학자간의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특화된 별도의 제재 법령이나 규정은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와 동일한 가이드 및 지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다.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경우

○ Horizon 2020의 뒤를 이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95.5억 유로를 투자, 연구를 지원하는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사업별 표준 계약 서식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

○ 대표적인 제재 처분 관련 규정인「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및 「Regulation (EU, Euratom) 2988/95」은 대표적인 제재 수단으로 참여배제 및 과징금 제도를 인정하며, 파산 등 재무 위험, 중대한 위법행위에 관한 법원 판결 기타 중대한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이러한 제재 사유 발생시에는 기지급한 자금의 환수나 제재 조치의 공표 등이 수반될 수 있음.

○ Horizon Europe Model Grant Agreement는 Financial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 따라 EU의 지원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inancial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서는 심각한 직업적 비행, 의무 위반, 사기, 부패, 부정행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원 배제 사유로 규정하며, 심각한 직접적 비행, 의무 위반, 사기, 부정행위는 동시에 재정적 제재 사유로 인정함

○ 보조금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향후 계약 낙찰절차 참여배제 및 EU가 지원한 모든 계약 및 보조금으로부터 제외, 보조금 계약 정지 및 해지, 금전적 제재(계약금의 10% 상한), 수혜자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라. 일본의 경우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出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내각부의 「경쟁적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경쟁연구비 지침’)을 공통지침으로 하여 각 정부부처별 세부 지침을 마련

○ 경쟁연구비 지침은 제재처분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부정사용, 부정수급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조작, 위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소관 정부부처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거나 연구비 신청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제도를 두고 있음

4.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혁신법상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제재 처분

○ 국제공동연구는 크게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과제형으로 구분되는데,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제재처분이 문제되는 유형은 '공동기관형' 임
- 공동기관형 연구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법령상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제재처분 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동일 적용

나. 해외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 조사 권한의 한계 : 지리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기관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기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유무, 귀책대상자 등을 판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곤란 : 혁신법상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납부의무자 및 그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비로소 가능한 절차로서, 해외 소재기관이 임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회수가 어려움

○ 국가별 법제 차이 : 각국의 법제도 별로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와 부정행위의 범주가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 법제도 및 연구문화의 차이 역시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다.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

○ 제재처분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및 그에 대한 책임 당사자 등 제재처분의 사유, 대상, 양정 등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임
- 부정행위 혐의 또는 발생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전문기관이 직접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외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협약에 반영할 필요 있음
- 협약 사항 예시 : △ 부정행위 혐의 발생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요구, △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 △ 전문기관의 조사 과정 공유 및 자료 제공 요구 권한, △ 부정행위 발생시 처리 절차 및 방안 등

○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전자문서 방식의 송달 등 절차적 적법성 확보도 고려해야 함
- 국제공동연구의 처분 대상자는 그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해외에 있고, 원활한 연락 내지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분청의 각종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유효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전자문서 방식의 송달로 인정받기 위해 협약상 △ 각종 통지, 안내, 통보 등의 수령인 지정 여부, △ 수령할 이메일 주소, △ 수령인 또는 수령자 변경 절차 등 반영해야

○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 정도 등이 제재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국가별로 R&D 관련 제재 대상 행위 유형이나 그 해석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고, △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협약상 동의 받아야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보완하여,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경우 임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협약상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민사상 구제를 받는 방법, 공표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보임. 수행기관 교육, 연구개발 수행 과정의 수시 점검 및 보고, 연구개발비 예산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등과 같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앞서의 검토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려면 협약 체결 전 단계에 법령 및 규정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사전에 제공,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협약 단계에서는 협약 서식에 반영하거나 별도 특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 제재 사유, 대상 및 제재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의 합의(또는 혁신법령에 따른 제재사유, 대상 및 제재 기준에 대한 동의), △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사실 발생시의 조사 및 검증 절차, △ 관련 자료의 제공 협조 기타 조사 및 검증에의 협력 의무, △ 제재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통지 및 통보 사항에 관한 송달 방법, △ 개별 제재사유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복잡·다양해지고 그 난도 역시 점차 고도화되면서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협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2. 10.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기술강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계획을 제시하였고, 기존 국내 연구 위주의 연구를 국제협력 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4. 2.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외국의 기관 및 연구자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이하 ‘국제공동연구’라 함)는 단순 지리적 차이 뿐만 아니라 국가별 연구문화 및 법제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등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 자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 및 연구자 역시 동일한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집행하기 어려워 제재처분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공동연구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유효·적절한 제재처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연구의 목표와 범위

미국, 영국, 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포함 R&D 일반 법제도 체계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 유형별 제재 수단 및 제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적용하는 제재 기준,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내지 운영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 성과 활용 방안

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나라가 국제공동연구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관리할 때 어떠한 제재처분 방침을 정하고 있는지 검토, 고찰하고, 본 연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2001. 1. 16. 법률 제6353호로 제정되고 7. 17.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11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에서 연구개발 극히 불량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에 근거한 참여제한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서울행정법원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이후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346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2010. 2. 법률 제9992호로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환수 제도를 신설하였다(제11조의2).

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기존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제11조의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의2 제1항).

이후 환수금 미납시 강제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금 처분의 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거쳐(2014.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2015. 6.), 반복적 부정행위 발생시 참여제한 처분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등(2015. 12.),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왔다.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1] 2021. 1. 1. 제정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출연금 환수 처분 사유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제정 이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제재처분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부정행위의 금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 변조 ·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정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기준에 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 그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i)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 · 위협 · 협박 행위, (ii)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사용 내역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i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6조[2]까지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iv)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

2) 제64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65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43조[3]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 제재처분 종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i)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ii) 제재부가금 부과, (iii)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 참여제한

참여제한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관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른바 '발주차단' 내지 '발주봉쇄' 등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이래(서울행정법원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왔다.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기한 참여제한 처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 즉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이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신규 과제의 신청을 제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 관련 수요 제출 행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전 기획 참여 행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제2조 제8호, 제32조 제1항).

❍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 처분으로, 정부출연금의 유용, 편취 행위가 발생하여도 기지급한 출연금을 반환받는 환수 제도만으로는 부정행위의 동기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4] 2011년 산업기술혁신촉진

---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 도입된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전체 R&D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제재처분 사유 중 연구개발비의 유용 등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한하여 제재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그 적용대상을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참여제한 처분 조치 사유와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자 부과 금액 기준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부과 금액의 20~30%로 제시하고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환수

환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부정행위 발생시 기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환받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위약벌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환수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공법상 계약인 협약에 따라 기지급한 출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환수 근거 조항을 명시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정리되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참여제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다만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반해 환수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주체인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환수처분이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 환수금액은 기지급한 정부출연금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그 억지력과 예방력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제재부가금 제도가 신설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 발생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제재부가금 처분으로 통일하면서, 환수처분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을 반환받는 처분으로 정리되었다(법 제32조 제3

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0244), 2014.5. 참조

항, 시행령 제59조 3항).

□ 제재처분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정한 부정행위를 비롯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6호)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6,7에 제재 사유별로 규정하고 있다.

<표1>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부과액[5]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	회수 금액을	-

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술료 납부할 때까지	-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150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150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한정한다.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상동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상동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1억원 +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7억원 +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제재 처분 절차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57조 제5항).

5) 연구개발기관 기준이며, 연구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행위 제외)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고(법 제33조 제2항), 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5항, 제6항).

[그림 1] 제재처분 절차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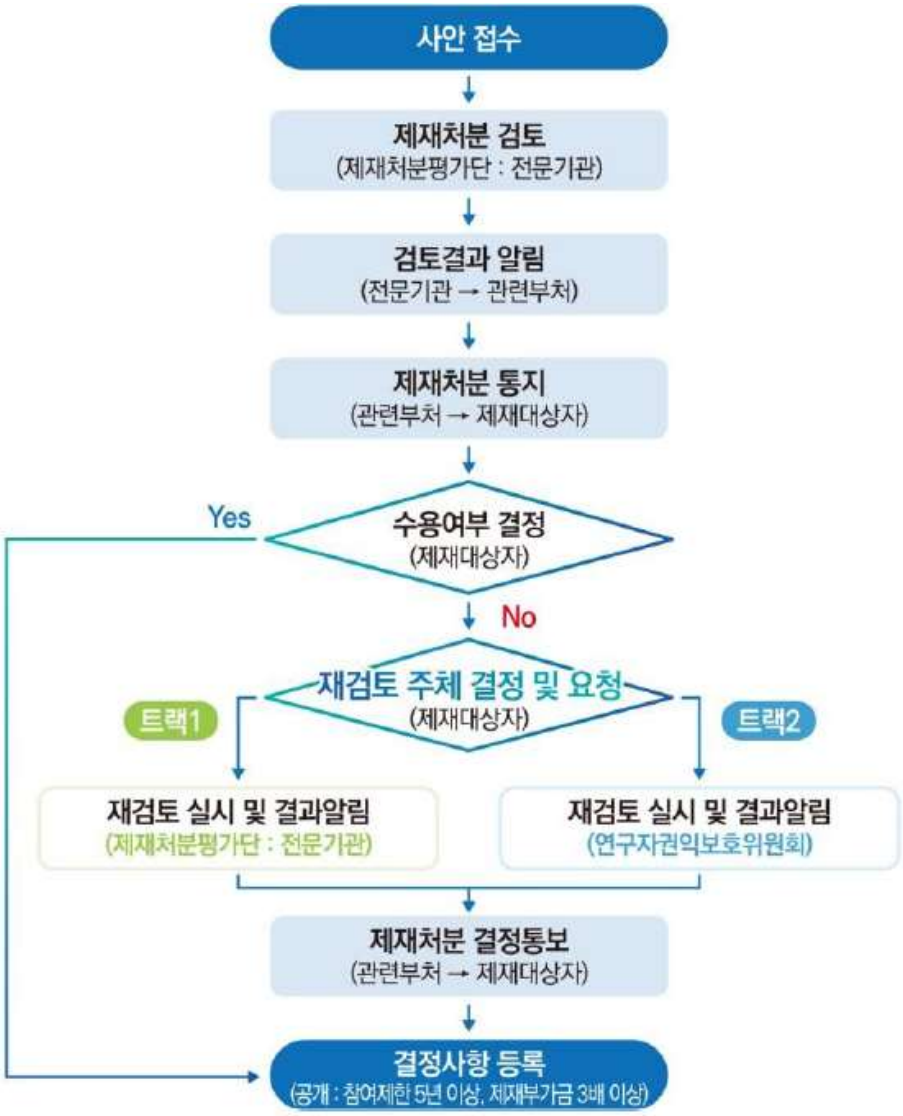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22쪽

제3장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의 제재처분 법제

1 미국

가. 보조금 및 부정행위 관련 법제도 일반

□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이하 'FGCAA')은 정부 기관이 연방재원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FGCAA는 연방재원의 교부 방식을 △ Contracts, △ Cooperative agreements, △ Grants로 구분한다. 이 중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 형태는 Cooperative agreements 방식과 Grants 방식이 인정되는데, Grant agreement는 미국 연방기관과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상당한 관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Section 5 of 41 USC 504 (FGCAA)), Cooperative agreements는 연방기관과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상당한 관여가 예상되는 경우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Section 6 of 41 USC 504 (FGCAA)).[7]

〈표2〉 Section 5, 6 of 41 USC 504 (FGCAA)

Section 5 of 41 USC 504 (FGCAA), "Each executive agency shall use a type of **grant agreement** as the legal instrument reflect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whenever-- (1)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relationship is the transfer of money, property, services, or anything of value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in order to accomplish a public purpose of support or stimulation authorized by Federal statute, rather than acquisition, by purchase, lease, or barter, of property or services for the direct benefit or us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2) **no substantial involvement is anticipated between the executive agency, ac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during performance of the contemplated activity**." 41 USC 504 (FGCAA) 제5조 "각 실행기관은 연방 정부와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관여를 반영하는 법적 문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Grant Agreement (보조금지급계약)**

7) https://uscode.house.gov/view.xhtml?hl=false&edition=prelim&req=granuleid%3AUSC-prelim-title31-section6305&num=0&saved=%7CKHRpdGxlOjMxIHNlY3Rpb246NjMwNSBlZGl0aW9uOnByZWxpbSk%3D%7C%7C%7C0%7Cfalse%7Cprelim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 관여의 주된 목적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사용을 위한 재산 또는 서비스를 매수, 임대 또는 물물교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승인된 지원 또는 촉진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하여 자산, 재산,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및
(2) 예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실행기관과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상당한 관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Section 6 of 41 USC 504 (FGCAA), "Each executive agency shall use a type of **cooperative agreement** as the legal instrument reflect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whenever—
(1)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relationship is the transfer of money, property, services, or anything of value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to accomplish a public purpose of support or stimulation authorized by Federal statute, rather than acquisition, by purchase, lease, or barter, of property or services for the direct benefit or us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2) **substantial involvement is anticipated between the executive agency, ac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other recipient during performance of the contemplated activity**."

41 USC 504 (FGCAA) 제5조
"각 실행기관은 연방 정부와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관여를 반영하는 법적 문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Grant Agreement (보조금지급계약)**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 관여의 주된 목적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사용을 위한 재산 또는 서비스를 매수, 임대 또는 물물교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승인된 지원 또는 촉진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하여 자산, 재산,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및
(2) 예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실행기관과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수취인 사이에 상당한 관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에 따르면, 연방기관은 Grant 방식으로 연방재원을 교부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성과의 주기적 확인,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범

위에서만 관여하며, Cooperative agreement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획, 실행 과정의 점검 및 조언, 공동 연구, 진행상황의 적극적 모니터링, 중요 사항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여를 하게 된다.[8)]

한편 FGCAA는 연방기관과 연구기관의 법률관계를 구축하고 연방기관에게 제재처분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ection 7 of 41 USC 504). 이를 위하여 연방기관은 연구비등 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구속력있는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Sections 2 & 9 of 41 USC 504).

<표 3> Section 2, 9 of 41 USC 504 (FGCAA)

Section 2 of 41 USC 504 (FGCAA), "(b)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 (4) to require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grantees and other recipients in Federal assistance programs and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system of guideline for the use of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s, and other forms of Federal assistance in carrying out such programs**." 41 USC 504 (FGCAA), 41 USC 504 (FGCAA) 제2조 "(b) 본 법의 목적은 [...] (4)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방 정부와 보조금 수취인 및 그 밖의 수취인 사이의 관계와 보조금, 협력 협약 및 기타 형태의 연방 지원의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시스템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7 of 41 USC 504 (FGCAA),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law, each executive agency **authorized by law** to enter into contracts,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s, or similar arrangements is **authorized and directed to enter into and use types of contracts, grant agreements, or cooperative agreements as required by this Act**. The authority to make contracts,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for the conduct of basic or applied research at nonprofi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r at non-profit organizations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conduct of scientific research shall include **discretionary authority, when it is deemed by the head of the executive agency to be in furtherance of the objectives of the agency, to vest in such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without further obligation to the government, or on such other terms and conditions as deemed appropriate, title to equipment or other tangible personal property purchased with such funds**."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 (I), 심정민 외

41 USC 504 (FGCAA) 제7조

"본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계약, 보조금, 협력 협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각 실행기관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계약, 보조금, 협력 협약의 유형을 체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과학 연구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기초 또는 응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 보조금, 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실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추가 의무 없이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건으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러한 자금으로 구매한 장비 또는 기타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재량권이 포함된다."

Section 9 of 41 USC 504 (FGCAA),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s **authorized to issue supplementary interpretative guidelines to promote consistent and efficient use of contract, grants agreement, and cooperative agreements** as defined in this Act."

41 USC 504 (FGCAA) 제9조
"관리예산국장은 이 법에 정의된 계약, 보조금, 협력 협약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석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제재 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방 보조금 규정(Uniform Guidance, 2 CFR[9] Part 200)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연방기관은 선지급 대신 환급, 특정 단계 전 성과 증명, 추가 재무보고, 모니터링, 사전 승인 등과 같은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 중지, 교부 취소, 추가 지원 중단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 자체를 종료할 수 있다.

<표 4> CFR Part 200 발췌

§ 200.339 Remedies for noncompliance.
If a non-Federal entity fails to comply with the U.S. Constitution, Federal statutes, regulations 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Federal award,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may impose additional conditions, as described in § 200.208. If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determines that

9) CFR은 미국연방행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이라 함)을 의미함
10) 지원 수혜 자격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실체적인 사항(사유별 제재 기

noncompliance cannot be remedied by imposing additional conditions,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may tak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ions, a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Temporarily withhold cash payments** pending correction of the deficiency by the non-Federal entity or more severe enforcement action by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b) **Disallow (that is, deny both use of funds and any applicable matching credit for) all or part of the cost of the activity or action not in compliance**.

(c) **Wholly or partly suspend or terminate the Federal award**.

(d) **Initiate suspension or debarment** proceedings as authorized under 2 CFR part 180[10)] and Federal awarding agency regulations (or in the case of a pass-through entity, recommend such a proceeding be initiated by a Federal awarding agency).

(e) Withhold further Federal awards for the project or program.

(f) Take other remedies that may be legally available.

§ 200.339 비준수에 대한 조치.

비연방 기관이 미국 헌법,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연방 보조금의 조건과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그 대행 기관은 § 200.208에 설명된 대로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 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그 대행 기관이 추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비준수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에 맞게 하나 이상의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비연방 기관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연방 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그 대행 기관이 더 심각한 집행 조치를 취할 때까지 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

(b) 준수하지 않는 활동이나 조치의 전체 또는 일부 비용에 대해 자금 사용 및 해당 매칭 크레딧을 모두 불허

(c) 연방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거나 종료

(d) 2 CFR part 180 및 연방 보조금 교부 기관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배제 절차를 개시(또는 대행 기관의 경우, 해당 절차를 연방 보조 기관이 개시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e)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연방 보조금 지급 보류

(f) 법적으로 가능한 기타 구제책

§ 200.340 Termination.

(a) The Federal award may be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as follows:

(1) By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if a non-Federal entity fails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Federal award;

(2) By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to the greatest extent authorized by law, if an award no longer effectuates the program goals or

agency priorities;
(3) By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with the consent of the non-Federal entity, in which case the two parties must agree upon the termination conditions, including the effective date and, in the case of partial termination, the portion to be terminated;
(4) By the non-Federal entity upon sending to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written notification setting forth the reasons for such termination, the effective date, and, in the case of partial termination, the portion to be terminated. However, if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determines in the case of partial termination that the reduced or modified portion of the Federal award or subaward will not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the Federal award was made,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may terminate the Federal award in its entirety; or
(5) By the Federal awarding agency or pass-through entity pursuant to termination provisions included in the Federal award.

§ 200.340 종료.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방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될 수 있다:
(1) 비연방 기관이 연방 보조금의 조건과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 의해;
(2) 보조금이 더 이상 프로그램 목표나 기관의 우선 순위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 의해;
(3) 비연방 기관의 동의를 얻어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 의해 종료될 때,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종료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이에는 종료 날짜와 부분 종료의 경우 종료될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4) 비연방 기관이 종료 이유, 종료 날짜, 그리고 부분 종료의 경우 종료될 부분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 보내는 경우. 그러나, 부분 종료의 경우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이 축소되거나 수정된 보조금 또는 하위 보조금이 연방 보조금이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은 연방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5) 연방 보조금에 포함된 종료 조항에 따라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 의해. (b) 연방 보조금 교부기관은 이 조항에 일관되게 각 연방 보조금에 적용되는 종료 조항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연방기관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그에 따른 의무 위반시의 제재 등 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R&D 펀딩 규모에 기초한 연방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준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표 5> 2024년 R&D 예산에 기초한 연방기관 리스트[11]

- Department of Defense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Energy
- NASA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Department of Commerce
- Department of Agriculture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epartment of Interior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Smithsonian Institu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라 함),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라 함), 국립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연구부정행위 대응 법제 및 지침

□ 부정청구법

부정청구법(False Claim Act, 이하 'FCA')은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공공 자금과 관련된 사기 및 허위청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법무부장관은 연구기관의 허위청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729 False claims, §3730 Civil actions for false claims).

동법은 보조금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기적 부정청구행위 전반을 다루고 있다. 허위임을 인식하면서(고의 또는 부주의한 해태를 모두 포함) 허위 청구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청구를 하게 하거나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청구 행위당 5,000~10,000 USD 상당의 벌금 및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https://sgp.fas.org/crs/misc/R47564.pdf

<표 6> § 3729 of FCA

§3729. False claims

(a) Liability for Certain Acts.-

(1) In general.-Subject to paragraph (2), any person who-

(A) knowingly presents, or causes to be presented, a false or fraudulent claim for payment or approval;

(B) knowingly makes, uses, or causes to be made or used, a false record or statement material to a false or fraudulent claim;

(C) conspires to commit a violation of subparagraph (A), (B), (D), (E), (F), or (G);

(D) ha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property or money used, or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knowingly delivers, or causes to be delivered, less than all of that money or property;

(E) is authorized to make or deliver a document certifying receipt of property used, or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intending to defraud the Government, makes or delivers the receipt without completely knowing that the information on the receipt is true;

(F) knowingly buys, or receives as a pledge of an obligation or debt, public property from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Government, or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who lawfully may not sell or pledge property; or

(G) knowingly makes, uses, or causes to be made or used, a false record or statement material to an obligation to pay or transmit money or property to the Government, or knowingly conceals or knowingly and improperly avoids or decreases an obligation to pay or transmit money or property to the Government,

is li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a civil penalty of not less than $5,000 and not more than $10,000, as adjusted by 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 (28 U.S.C. 2461 note; Public Law 104–410 1), plus 3 times the amount of damages which the Government sustains because of the act of that person.

§3729. 부정청구행위

(a) 특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1) 일반적으로,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990 연방 민사 벌금 인플레이션 조정법 (28 U.S.C. 2461 note; Public Law 104–410 1)에 따라 조정된 바에 따라 USD 5,000 이상 USD 10,000 이하 상당의 민사 벌금과 그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더한 금액을 미국 정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지급 또는 승인을 위해 고의로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한 부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케 하는 경우;

(B)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한 부정청구를 위해 고의로 허위 기록 또는 허위의 진술 자료를 작성, 사용하거나 작성 또는 사용케 하는 경우;
(C) (A), (B), (D), (E), (F) 또는 (G)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모하는 경우;
(D) 정부가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산 또는 자금을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고의로 해당 금액 또는 재산의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교부하거나 교부케 하는 경우;
(E) 정부가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산에 대한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전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부를 기망할 목적으로 그 수령증의 정보가 진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작성 또는 전달하는 경우;
(F) 고의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임직원 또는 군대 구성원으로부터 공공재산을 매입하거나 채무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또는
(G) 고의로, 정부에 자금이나 재산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의무에 대해 허위 기록이나 허위의 진술자료를 작성, 사용하거나 작성 또는 사용케 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정부에 자금이나 재산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의무를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동법에서 다루는 보조금 사기행위 유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12)]

- 개인적 용도의 비용을 보조금 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
-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에 기인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청구
- 부풀려진 인건비나 시간 또는 발생하지 않은 노동 범주(예: 가상의 직원,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에 대한 청구
- 보조금 신청서 또는 계약 제안서의 정보를 위조하는 행위
- 동일한 작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보조금 또는 계약을 청구하는 행위
-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 승인된 재료를 승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대체하는 행위
-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프로젝트의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협상된 것보다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행위
- 공무원이 특정 회사,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에게 보조금 또는 계약을 수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12) https://www.grants.gov/learn-grants/grant-fraud/grant-related-scams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통령실 연방정책(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Preamble for Research Misconduct Policy, 65 FR 76260-76264[13])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V. Agency Administrative Actions').

이 정책은 연구부정행위, 즉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및 표절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방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 반복 여부, 연구 및 연구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 연구지원의 중단 또는 철회, △ 연방지원 프로그램 또는 특정 프로젝트에의 참여제한, △ 연구결과의 철회 또는 수정, △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 명단 공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기관은 이 정책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과정에서 실행하고 연구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표 7> V. Agency Administrative Actions 발췌본

Seriousness of the Misconduct.
In deciding what administrative actions are appropriate, the agency should consider the seriousness of the miscon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egree to which the misconduct was knowing, intentional, or reckless; was an isolated event or part of a pattern; or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earch record, research subjects, other researchers, institutions, or the public welfare.

부정행위의 심각성
연방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그 부정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무모했는지, 단일 사건이었는지 또는 여러 패턴의 일부였는지, 연구 기록, 연구 대상, 다른 연구자 및 기관, 공공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Possible Administrative Actions.
Administrative actions availabl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ppropriate steps to correct the research record; letters of reprimand; the imposition of special certification or assurance requirements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or terms of an award;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an active award; or suspension and debarmen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governmentwide rules on suspension and debarment. In the event of suspension or debarment, the information is made 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List of Parties Excluded

13) FR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간하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이하 'FR'이라 함)를 의미함.

from Federal Procurement and Nonprocurement Programs maintained by th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actions imposed upon government employees, the agencies must comply with all relevant federal personnel policies and laws.

가능한 행정조치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연구기록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 서면 경고, 해당 규정 또는 수상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인증 또는 보증 요건 부과, 진행중인 수상 보류 또는 종료, 정부 차원의 보류 및 금지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보류 또는 금지에 관한 정보는 미국 연방조달청이 관리하는 조달・비조달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당사자의 목록을 통해 공개된다.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연방의 모든 인사 정책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In Case of Criminal or Civil Fraud Violations.
If the funding agency believes that criminal or civil fraud violations may have occurred, the agency shall promptly refer the matter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Inspector General for the agency, or other appropriate investigative body.

형사 또는 민사상 사기 위반의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형사 또는 민사상 사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법무부, 기관의 감사관 또는 기타 적절한 수사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 DOE의 R&D 관련 부정행위 제재

□ DOE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법제

DOE, 즉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10 CFR Part 600을 바탕으로 DO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s, DOE Specific Guidelines and Enforcement Actions 및 2 CFR Part 200 등을 통해 연방 보조금의 관리 및 지원 형태에 관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보조금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R&D와 관련한 특별한 행위 요건이나 제재 수단 등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언급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서 부과되는 의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위

FGCAA 및 보조금 규정 참조).

이 중 R&D 보조금 관련 연구부정행위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DOE 보조금, 협력 협약, 관리 및 운영(M&O) 계약으로 지원되는 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의 처리 절차에 관한 연방규정(CFR-2024-title10, §733)[14], 보조금 및 협력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관한 연방규정(CFR-2024-title10, §600.31), M&O 계약자에 관한 미국 에너지부 획득규정(Department of Energy Acquisition Regulation, 952.235-71) 등에서 다루고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유, 절차 및 조치 수단**

연구부정행위의 제제처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상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제재처분 사유**

- 연구기관이 연구를 제안, 수행, 검토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보고할 때의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됨

- 정직한 오류(honest error)나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opinion)는 제외(CFR-2024-title10, §733.3, CFR-2024-title10, §600.31, DEAR 952.235-71(f))

- 연구부정행위는 i)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으로 이탈한 것인지 ii) 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무모하게 저지른 것인지의 관점에서, 증거의 우월성 원칙에 따라 판단됨(CFR-2024-title10, §733.3)

〈표 8〉 CFR-2024-title10, §733.3

CFR-2024-title10, §733.3(Definitions) *Research misconduct* means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plagiarism in proposing, performing, or reviewing research, or in reporting research results, but does not include honest error or differences of opinion. *Fabrication* mean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Falsification* mean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14) 2000년 12월 6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수립한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연방 정책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DOE와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수행된 과학 연구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적용됨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Plagiarism mean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Finding of research misconduct means a determination, based o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research misconduct has occurred. Such a finding requires a conclusion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accepted practices of the relevant research community and that it be knowingly, intentionally, or recklessly committed.

정의(Definitions)
*연구부정*이란, 연구를 제안・수행・검토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정직한 오류나 의견의 차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조란, 데이터 또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기록 또는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또는 프로세스를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 기록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단어를 적절한 승인없이 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발견*이란,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그 발견은 관련 연구 커뮤니티에서 인정되는 관행으로부터 크게 벗어났으며 고의적, 의도적 또는 무모하게 저질러졌다는 결론을 필요로 한다.

CFR-2024-title10, §600.31, DEAR 952.235-71(f)의 정의 조항도 위와 동일함

❍ **제재처분 주체**

- DOE는 연구기관의 제안, 수행, 평가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할 때 계약상 요구 사항 또는 재정 지원 요건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수립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연방 정책(65 FR 76260-76264)을 적용함(CFR-2024-title10, §733.4)

- DOE는 수여기관의 보조금에 관한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규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자(연구기관)의 선의와 제재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DOE의 조치 사항과 이의절차를 연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CFR-2024-title10, §600.31(e)).

❍ **제재처분 절차**

- DOE가 DOE와의 계약 또는 재정 지원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서면을 접수하면, DOE는 계약 또는 재정 지원 협정에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DOE Element[15])에 처리하도록 회부(CFR-2024-title10, §733.5)

- 사안을 전달받은 담당부서는 감사부서(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와 협의하여 감사부서가 혐의를 조사할 것인지 결정(§733.6)하며, 감사부서가 조사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약담당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전달(§733.7)

-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 또는 재정 지원 수혜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통지하고 그들에게 계약 또는 재정 지원 협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733.8 (a))

- 계약당사자 또는 재정 지원 수혜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1) DOE 프로그램을 지정, 조사하여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적절한 시정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2) 계약당사자 또는 재정 지원 수혜자를 대신하여 연구부정행위 요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 결과를 도출함(§733.7 (b))

-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초기 조사[16]를 실시하여야 함. 본조사[17]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본조사를 진행하여야 함(§600.31 (c)).

-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관련 혐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혐의가 충분히 사소하여 초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공공보건, 안보에 관한 것이거나 범죄의 가능성이 인정되면 DOE가 직접 조사할 수 있음(§600.31 (d))

- 연구기관 또는 DOE가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i) 정보와 혐의 당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ii) 객관성 및 전문성, iii) 시의성(조사는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은 조사 기록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될 것), iv) 기밀성, v) 시정 및 제재조치 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600.31 (f))

---

15)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이끄는 DOE의 주요 부서로 계약 또는 재정 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음(CFR-2024-title10, §733.3 (원문) DOE Element means a major division of DOE, usually headed by a Presidential appointee, which has a delegation of authority to carry out activities by entering into contracts or financial assistance agreements)

16) Initial Inquiry.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초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의미(§600.31 (b))

17) Investigation. 관련 사실에 관한 공식적인 검토 및 평가를 의미(§600.31 (b))

-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기록을 수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한 제한, 통제 또는 조건 부여 등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 연구기관은 인사법, 정책 및 절차와 위법 행위의 심각성, 영향, 고의의 유무와 단일 사건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인사 제재가 적절한지도 고려하여야 함(§600.31 (f)(5))

- i) 연구기관은 초기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발견, 적절한 시정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ii) 본조사로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 요청에 따라 조사 결과와 후속 판정을 알려야 함.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증거와 보고서, 시정 및 권고조치, 연구기관의 서면 회신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iii) 본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초기 조사 및 본조사에 관여하지 않은 책임자가 판정을 수행하며, 그 판정에는 본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적절한 시정 및 제재처분이 포함됨(§600.31 (c))

❍ **제재처분 종류**

- 연구기록을 수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한 제한, 통제 또는 조건 부여, 인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함

〈표 9〉 CFR-2024-title10, §600.31

§600.31 Research misconduct (f) In conducting the activities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the recipient and the Department, if it elects to conduct the inquiry or investigation, shall adhere to the following guidelines: (5) Remediation and sanction. If the recipient finds that research misconduct has occurred, it shall assess the seriousness of the misconduct and its impact on the research completed or in process. The recipient must take all necessary corrective actions. Such action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rrecting the research record and as appropriate imposing restrictions, controls, or other parameters on research in process or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e recipient must coordinate remedial actions with the Contracting Officer. The recipient must also consider whether personnel sanctions are appropriate. Any such sanction must be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personnel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and must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the misconduct and its impact, whether it was done knowingly or intentionally, and whether it was an isolated event or pattern of conduct.

§600.31 연구부정행위
(f) 수혜자와 DOE는 초기 조사 및 본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여 본 조 (c)에 정한 활동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시정 및 제재조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한 수혜자는,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연구기록을 수정하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한 제한, 통제 기타 변수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수혜자는 계약담당자와 시정 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인사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는 인사 관련 법령, 정책, 절차 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그 영향, 고의 여부, 단일 사안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HHS의 R&D 관련 부정행위 제재

□ HHS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법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중 보건 서비스 정책」(CFR-2023-title42, §93)은 미국 보건보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이하 'HHS')로부터 공중보건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받는 기관의 책임, 부정행위의 정의 및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HHS는 생물의학, 행동학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위한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이하 'PHS'라 함)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언제든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연구기관 및 그 구성원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응하고 보고할 1차적 책임과 함께 지원자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CFR-2023-title42, §93.100).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유, 절차 및 조치 수단

연구부정행위의 제제처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상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제재처분 사유**

- 연구기관이 연구를 제안, 수행, 검토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보고할 때의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정직한 오류(honest error)나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opinion)는 제외됨(CFR-2023-title42, §93.103, DOE와 동일)

- 연구부정행위는 i)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으로 이탈한 것인지 ii) 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무모하게 저지른 것인지의 관점에서, 증거의 우월성 원칙에 따라 판단됨 (CFR-2023-title42, §93.104, DOE와 동일)

❍ **제재처분 주체**

- 생물의학, 행동학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위한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이하 'PHS'라 함)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궁극적인 감독 권한과 언제든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CFR-2023-title42, §93.100(b))

-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과정의 무결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대응 및 보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짐

❍ **제재처분 절차**

-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HHS 또는 연구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한하여 본 규정이 적용됨. 다만 i)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갱신하는 경우(후속 사용), ii) 공공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i) 규정 시행 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접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CFR-2023-title42, §93.105)

- 전반적인 절차는 DOE와 유사·동일함(연구기관의 초기 조사, 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HHS와 연구진실성위원회[18]에 본조사 개시보고 및 착수, 결과 보고 등, CFR-2023-title42, §93.300-319)

❍ **제재처분 종류**

- HHS는 i) 연구기록의 해명, 수정 또는 철회 ii) 서면 경고 iii) 계약 및 협정 준수를 위한 특별 인증이나 조건 부여, iv)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의 보류 또는 종료, v) 진행 중인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에 따른 특정 활동 또는 지출 제한. vi) 모든 PHS 자금 요청에 대한 특별 검토 vii)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정에 감독 요건 부과, viii) PHS에 대한 모든 지원 요청과 보고서의 진위 판단 ix) PHS 자문 역할에의 참여제한 x) 피신고자가 연방 직원인 경우, 관련 법률 및 정책

18)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이하 'ORI'라 함(CFR-2023-title42, §93.217)

에 따른 인사조치, xi) 45 CFR 76, 48 CFR 9.4 및 309.4 또는 둘 다에 따른 정직 또는 금지, xii)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활동으로 지원된 PHS 자금 회수 등을 할 수 있음(CFR-2023-title42, §93.407).

- HHS는 연구부정행위가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혐의 당사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제보자나 증인, 위원회에게 보복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음(CFR-2023-title42, §93.408)

<표 10> CFR-2023-title42, §93.407

§93.407 (HHS administrative actions)
(a) In response to a research misconduct proceeding, HHS may impose HHS administrative action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Clarification, correction, or retraction of the research record.
(2) Letters of reprimand.
(3) Imposition of special certification or assurance requirements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or terms of PHS grants, contracts, or cooperative agreements.
(4)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a PHS grant, contract, or cooperative agreement.
(5) Restriction on specific activities or expenditures under an active PHS grant, contract, or cooperative agreement.
(6) Special review of all requests for PHS funding.
(7) Imposition of supervision requirements on a PHS grant, contract, or cooperative
agreement.
(8) Certification of attribution or authenticity in all requests for support and reports to the PHS.
(9) No participation in any advisory capacity to the PHS.
(10) Adverse personnel action if the respondent is a Federal employee, in compliance with relevant Federal personnel policies and laws.
(11) Suspension or debarment under 45 CFR Part 76, 48 CFR Subparts 9.4 and 309.4, or both.
(b) In connection with findings of research misconduct, HHS also may seek to recover PHS funds spent in support of the activities that involved research misconduct.
(c) Any authorized HHS component may impose, administer, or enforce HHS administrative actions separately or in coordination with other HHS compon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RI,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the PHS funding component, and the debarring official.

§93.407 HHS 행정처분

(a) 연구부정행위 절차에 대한 대응으로 HHS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HHS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기록의 해명, 수정 또는 철회
(2) 서면 견책
(3)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의 관련 규정 또는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인증 또는 보장 요건의 부과
(4)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의 중지 또는 종료
(5) 진행 중인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에 따른 특정 활동 또는 지출에 대한 제한
(6) 모든 PHS 자금 요청에 대한 특별 검토
(7) PHS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에 감독 요건 부과
(8) PHS에 대한 모든 지원 요청 및 보고 시 귀속 또는 진위에 대한 확인
(9) PHS에 대한 자문 역 참여제한
(10) 피심인이 연방 직원인 경우, 관련 연방 인사 정책 및 법에 따른 불리한인사조치
(11) 45 CFR 76, 48 CFR 9.4 및 309.4 또는 둘 다에 따른 정지 또는 자격박탈
(b) 연구부정행위의 발견과 관련하여, HHS는 또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PHS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c) 권한이 있는 HHS 부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ORI, 감사관실, PHS 기금 부서 및 자격 박탈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기타 HHS 부서들과 협력하여 HHS 행정 처분을 부과, 관리 또는 집행할 수 있다.

마. NSF의 R&D 관련 부정행위 제재

□ NSF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법제

연방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a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유,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서 「연구부정행위 정책」(CFR-2023-title45, §689)을 적용하고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유, 절차 및 조치 수단

위 정책상 연구부정행위의 제제처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상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제재처분 사유

- 연구기관이 연구를 제안, 수행, 검토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보고할 때의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정직한 오류(honest error)나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opinion)는 제외됨(CFR-2023-title45, §689.1, DOE, HHS와 동일)

- 연구부정행위는 i)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으로 이탈한 것인지 ii) 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무모하게 저지른 것인지의 관점에서, 증거의 우월성 원칙에 따라 판단됨(CFR-2023-title45, §689.2(c), DOE, HHS와 동일)

❍ 제재처분 주체

- NSF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CFR-2023-title45, §689.2(a))

<표 11> CFR-2023-title45, §689.2(a)

CFR-2023-title45, §689.2 일반 정책 및 책임(General policies and responsibilities) (a) NSF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individuals or institutions upon a finding that research misconduct has occurred. Possible actions are described in § 689.3. NSF may also take interim action during an investigation, as described in § 689.8. (a) NSF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자 개인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한 조치는 § 689.3에 명시되어 있다. NSF는 또한 § 689.8에 명시된 바에 따라 조사 중에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제재처분 절차

- NSF는 초기 조사 또는 본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발견할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NSF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혐의 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CFR-2023-title45, §689.2(d))

- NSF의 감사부서(OIG)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NSF의 초기 및 본조사를 수행하

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독함(CFR-2023-title45, §689.2(f))

- NSF 부국장은 연구부정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국장은 이의제기를 결정함(CFR-2023-title45, §689.2(g))

- 혐의 대상자는 부국장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하면, 부국장의 결정이 최종 처분으로 확정됨(CFR-2023-title45, §689.10)

❍ **제재처분 종류**

- NSF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행위가 고의적, 의도적 또는 무모하였는지, 단일 사건인지, 공익이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하여 3단계로 구분한 제재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CFR-2023-title45, §689.3)

- Group1: 서면 경고,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특정 활동시 NSF의 사전 승인 절차 추가, 혐의 대상자가 아닌 연구기관 구성원에게 특정 정책, 규정, 지침, 약관을 준수할 의무 부과
- Group2: 진행 중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한, 연구부정행위 재발방지 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요청에 대한 특별 검토, 연구기록 수정
- Group3: 지원 종료, 일정 기간 NSF의 자문 또는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한, 추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연방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 임시조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 「Disbarment&Suspension(자격박탈 및 정지)」 규정에 따라 연방 수혜 자격 정지, 특정 연구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 규정이나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 보증 또는 승인 요구, 지원금 지급 연기, NSF 자문,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한 또는 중단

<표 12> CFR-2023-title45, §689.3

CFR-2023-title45, §689.3 조치(Actions) (a) Possible final actions listed in this paragraph (a) for guidance range from minimal restrictions (Group I) to the most severe and restrictive (Group III). They are not exhaustive and do not include possible criminal sanctions.

(1) Group I actions.
(i) Send a letter of reprimand to the individual or institution.
(ii) Require as a condition of an award that for a specified period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obtain special prior approval of particular activities from NSF.
(iii) Require for a specified period that an institutional official other than those guilty of misconduct certify the accuracy of reports generated under an award or provide assurance of compliance with particular policies, regulations, guidelines, o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2) Group II actions.
(i) Totally or partially suspend an active award, or restrict for a specified period designated activities or expenditures under an active award.
(ii) Require for a specified period special reviews of all requests for funding from an affected individual or institution to ensure that steps have been taken to prevent repetition of the misconduct.
(iii) Require a correction to the research record.
(3) Group III actions.
(i) Terminate an active award.
(ii) Prohibit participation of an individual as an NSF reviewer, advisor, or consultant for a specified period.
(iii) Debar or suspend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from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for a specified period after further proceedings under applicable regulations.

(c) Interim action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Totally or partially suspending an existing award;
(2) Suspending eligibility for Federal awards in accordance with debarment-and-suspension regulations;
(3) Proscribing or restricting particular research activities, as, for example, to protect human or animal subjects;
(4) Requiring special certifications, assurances, or other, administrative arrangements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or terms of the award;
(5) Requiring more prior approvals by NSF;
(6) Deferring funding action on continuing grant increments;
(7) Deferring a pending award;
(8) Restricting or suspending participation as an NSF reviewer, advisor, or consultant.
(a) 지침에 대한 본 조 (a)목에 명시된 '가능한 최종 조치'는 최소 제한(Group

I)단계부터 최상위 제한(Group III)단계까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것을 망라한 완전한 것이 아니며 가능한 형사제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1) Group I 단계
(i) 혐의 당사자 또는 연구기관에 서면 경고 발송
(ii) 특정 기간 동안 혐의 당사자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활동 시 NSF의 특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원 조건 요구
(iii)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기관 관계자가 특정 기간 동안 지원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정확성을 증명하거나 특정 정책, 규정, 지침 또는 특별 약관의 준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
(2) Group II 단계
(i) 진행 중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지원금에 따라 지정된 활동 또는 지출 제한
(ii) 부정행위 재발방지 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혐의 당사자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별 검토 요구
(iii) 연구기록 수정 요구
(3) Group III 단계
(i) 지원 종료
(ii) 일정 기간 혐의 대상자가 NSF의 검토 자문 또는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한
(iii)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혐의 당사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방 프로그램 참여 금지 또는 제한
(c) 임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
(2) 「Disbarment & Suspension(자격 박탈 및 정지)」규정에 따라 연방 수혜 자격 정지;
(3) 피험자 또는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연구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
(4) 해당 규정 또는 지원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인증, 보증 또는 기타 행정적 조치 요구;
(5) NSF으로부터 추가적인 사전 승인 요구;
(6) 지속적인 보조금 증액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연기;
(7) 지원금 지급 연기; 또는
(8) NSF 검토, 자문, 컨설턴트로서의 참여 제한 또는 중단.

□ **NSF의 협약에 따른 조치 권한**

NSF의 Grant General Conditions (‘GC-1’)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반 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서식에서, 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9]

19) https://www.nsf.gov/bfa/dias/policy/gc1/oct24.pdf 2024. 10. 1.자로 개정된 것

- 보조금 수령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NSF 규정(45 CFR §689)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NSF에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음(1.Recipient Responsibilities and Federal Requirements (a)).
- 보조금 수령자는 연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중요 문제를 NSF에 보고하여야 함.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14. Project Reporting Requirements)
- 보조금 수령자가 연방 보조금의 지급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시 연방 보조금 규정(2 CFR §200) 및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 Chapter XII.A.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33.Termination and Enforcement (a,b))
-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부 종료된 경우, NSF와 수령자 모두 연방 보조금 규정(2 CFR §200.344, §200.345)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33.Termination and Enforcement (f))

참고로 NSF의 Cooperative Agreement Financial & Administrative Terms and Conditions ('CA-FATC')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 보조금 수령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NSF 규정(45 CFR §689)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NFS에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음(1.Recipient Responsibilities and Compliance with Federal Requirements).
- 보조금 수령자는 연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중요 문제를 NSF에 보고하여야 함.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14. Project Reporting Requirements)
- 보조금 수령자가 연방 보조금의 지급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시 연방 보조금 규정(2 CFR §200) 및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 Chapter XII.A.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33.Termination and Enforcement (a,b))
-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부 종료된 경우, NSF와 수령자 모두 연방 보조금 규정(2 CFR §200.344, §200.345)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33.Termination and Enforcement (f))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는 NSF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 평가하고 지원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Chapter XII에서는 지원의 정지 또는 종료에 관한 NSF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NSF는 보조금 수령자가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목적 또는 기관의 정책에 비추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연구부정행위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종료를 명함으로써 지원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NSF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바. 제재 사례

□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 연구기관: 듀크대학교[20)]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허위 연구가 포함된 신청서와 진행 상황 보고서를 NIH와 EPA에 제출, False Claims Act 위반)

- 경위 및 배경: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듀크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30건에서, 위조 또는 조작된 데이터, 진술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됨. 위 혐의는 듀크대학교 전 직원(Joseph Thomas)이 False Claims Act(허위청구법)의 내부고발자 조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Erin Potts-Kant가 2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연구에서 데이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에 의한 것으로, 듀크대학교는 위 혐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 1억 1,2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 조치내용: 연구비 반환(1억 1,250만 달러)

❍ 연구기관: 오하이오의과대학교[21)]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보조금 신청서 표절)

- 경위 및 배경: 피처분자(James H. Freisheim)는 NIH 연구 섹션에서 신청서 검토위원

---

20) https://www.justice.gov/opa/pr/duke-university-agrees-pay-us-1125-million-settle-false-claims-act-allegations-related

21)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93-177.html

으로 활동한 적 있는데, 자신의 NIH 보조금 신청서에 다른 연구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표절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 피처분자는 자필 초안을 제출하면서 표절을 부인하였으나, 조사 결과 피처분자 주장보다 훨씬 늦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고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됨

- 조치내용: 신청자격 정지 3년, Public Health Service 자문위원회 활동 금지 10년

❍ 연구기관: 마이애미대학교[22)]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연구 데이터 위조/조작)

- 경위 및 배경: 피처분자(Judy Guffee)는 다클론 항혈청을 생성하는 동물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송아지 혈청을 다클론 항혈청이라고 허위 기재하였고, 2년 동안 대량의 혈청을 채취했다는 기록도 조작하였음.

- 조치내용: 5년간 당사자와 기관이 작성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계약 제안서에 진술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연구기관: 다나 파버 암 연구소, 하버드대학교[23)]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보조금 신청서 표절/도용)

- 경위 및 배경: 피처분자(Mark M. Kowalski)는 과거 보조금을 수령한 전 지도교수의 신청서를 표절하여, 자신의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함

- 조치내용: 3년 동안 당사자가 작성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제안서에 진술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Public Health Service 자문위원회 활동 금지 조치

□ **부정사용 등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 연구기관: Education Appeal Board[24)]

---

22)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93-177.html

23)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93-177.html

24)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61/773/

- 제재사유: 연구비 부정사용

- 경위 및 배경: 연방 정부는 뉴저지 주와 미주리 주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금을 지원해왔는데, 조사 결과 기금 일부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됨. 이에 연방 정부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교육 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주 정부는 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짐.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에게 교육 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 정부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조치내용: 연구비 반환

사.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 처분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 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별도로 다루는 법령이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연방법 차원에서 R&D 재정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R&D 관련 제재 권한을 포함하여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방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방기관의 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외의 사항은 계약 위반이나 사기 등 민형사 절차에 따르는 점 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각 부처나 연방기관이 독립적으로 국제공동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역시 기관별로 마련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기관별 입장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NSF는 외국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 외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 Principal Investigator와 같은 주 연구자가 될 수는 없고 연구자금 역시 자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25)]

아. 소결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R&D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연방 법률을 별

25) https://www.research.ucsb.edu/foreign-involvement-disclosure-requirements 참조

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공재정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규율하는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 연방보조금 규정이 R&D 분야의 보조금을 함께 다루고 있다. 동 법 및 규정에 따라, 연방기관은 연구비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방 법령 및 연방기관의 구속력 있는 규정, 지침 등은 공통적으로 △ 위·변조 및 표절을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로 정의하고,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와 방법, 제재 조치를 규정하되, △ 그 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급 지급 중지나 교부 취소, 추가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의 법제와 달리 제재 사유와 사유별 조치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상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이는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행정과는 체계를 달리 하는 영미 행정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미 행정법은 판례에 기초한 불문법인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적 의사결정, 특히 최종적 처분에 해당하는 재결 단계에 ADR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부여되고 있다.[26]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역시 정도의 심각성, 행위자의 고의 또는 의도, 행위의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중단,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연구활동시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원을 계속하되 조건을 부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그 재량적 판단 및 처분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어 있다.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허위청구 등은 정부의 보조금 사기로 인정될 경우,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민·형사적 조치로 대응한다.

2 영국

가. 영국의 R&D 지원 체계

2017년 제정된 「고등교육 및 연구법」(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 이하 'HER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UKRI')는 과학, 기술, 인문 및 새로운 아이디어 **연구·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기구이다.

UKRI는 이전의 영국혁신청(Innovate UK), 영국연구회(Research England)외에 기존의 7개 연구위원회를 통합하고, 각 산하 위원회가 분야별 R&D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26)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행정법학 제17호에서 발췌 인용

하고 있다.

[그림 2] UKRI의 조직 구조[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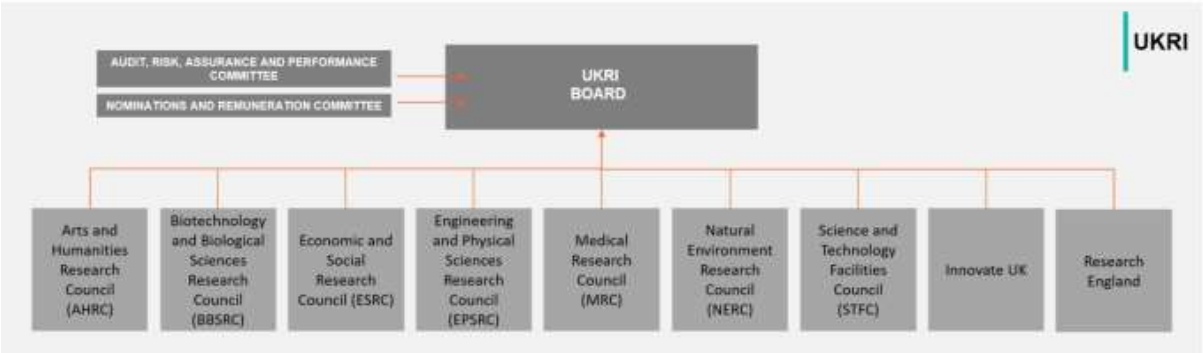

나. R&D 관련 부정행위 및 제재 조치

UKRI는 「The UK Research Innovation fEC Grant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이하 **'표준 보조금 약관'** 또는 **'RGC'**), 「The UKRI Counter Fraud and Bribery Policy」(이하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UKRI Policy and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이하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28]에 따라 R&D 관련 부정행위를 통제, 관리하고 있다.

❍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

-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행위 외에도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고의 · 중과실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등을 포함함(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3조)

<표 13>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3조

UKRI Policy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3. UNACCEPTABLE RESEARCH CONDUCT Fabrication: This comprises the creation of false data or other aspects of research, including documentation and participant consent. Falsification: This comprises the inappropriate manipulation and/or selection of data, imagery and/or consents.

27) https://www.ukri.org/wp-content/uploads/2020/10/UKRI-111020-UKRIFrameworkDocument.pdf 참조

28) UKRI-020424-GovernanceGoodResearchPracticePolicy2024.pdf

Plagiarism: This comprises the misappropriation or use of others' ideas, intellectual property or work (written or otherwise), without acknowledgement or permission.

Misrepresentation, including:

• Misrepresentation of data, for example suppression of relevant findings and/or data, or knowingly, recklessly or by gross negligence, presenting a flawed interpretation of data

• Undisclosed duplication of publication, including undisclosed duplicate submission of manuscripts for publication

• Misrepresentation of interests, including failure to declare material interests either of the researcher or of the funders of the research

• Misrepresentation of qualifications and/or experience, including claiming or implying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which are not held

• Misrepresentation of involvement, such as inappropriate claims to authorship and/or attribution of work where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ontribution, or the denial of authorship where an author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reach of duty of care, whether deliberately, recklessly or by gross negligence:

• Disclosing improperly the identity of individuals or groups involved in research without their consent, or other breach of confidentiality;

• Placing any of those involved in research in danger, whether as subjects, participants or associated individuals, without their prior consent, and without appropriate safeguards even with consent; this includes reputational danger where that can be anticipated

• Not taking all reasonable care to ensure that the risks and dangers, the broad objectives and the sponsors of the research are known to participant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to ensure appropriate informed consent is obtained properly, explicitly and transparently

• Not observing legal and reasonable ethical requirements or obligations of care for animal subjects, human organs or tissue used in research,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Improper conduct in peer review of research proposals or results (including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is includes failure to disclose conflicts of interest; inadequate disclosure of clearly limited competence; misappropriation of the content of material; and breach of confidentiality or abuse of material provided in confidence for peer review purposes

Improper dealing with allegations of misconduct:

• Failing to address possible infringements including attempts to cover up misconduct or reprisals against whistle-blowers

• Failing to deal appropriately with malicious allegations, which should be

handled formally as breaches of good conduct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3. 허용되지 않는 연구행위

위조: 위조에는 허위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고 참여자 동의를 받는 등 기타 연구와 관련된 모든 부정행위들이 포함된다.

변조: 변조에는 데이터, 이미지 및/또는 동의서를 부적절하게 조작 및/또는 선택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표절: 표절에는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 재산 또는 저작물(서면 또는 기타)을 승인이나 허가 없이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허위 진술은 다음을 포함함:

• 데이터의 허위 진술, 예를 들어, 관련 결과 및/또는 데이터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중과실로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는 행위

• 출판 원고의 미공개 중복 제출을 포함한 미공개 중복 출판 행위

• 연구자 또는 연구 자금 제공자의 중대한 이해관계 미 신고를 포함하여 이해관계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보유하지 않은 자격이나 경험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격 및/또는 경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저작 및/또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적절하게 주장하거나, 저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부인하는 등 관여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고의・부주의・중과실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

• 연구에 참여한 사람 또는 그룹의 신원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기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 연구에 관련된 사람을 피험자, 참여자 또는 관련 당사자로서 사전 동의 없이, 동의가 있더라도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이는 예상 가능한 평판 상의 위험을 포함함.

• 연구에 대한 위험과 위험성, 광범위한 목적 및 의뢰자를 참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적절하게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적절하고 명시적이며 투명하게 동의를 얻도록 모든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

•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동물, 인체 장기, 조직 또는 환경 보호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윤리적 요구 사항 또는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연구 제안이나 결과물(출판을 위해 제출된 원고 포함)에 대한 동료 심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이는 이해 상충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권한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자료의 내용을 오용하는 행위, 동료 심사 목적으로 비밀로 제공된 자료를 남용하거나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함.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하거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가능한 침해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행위

• 신의성실 행위의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악의적인 주장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행위

❍ **표준 보조금 약관에 따른 의무불이행시 조치**

- 보조금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RGC 11.1), 보조금 종료 보고서 또는 지출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RGC 11.2), 재정적 제재 및/또는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액의 20%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함

<표 14>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 Sanctions

The UK Research Innovation fEC Grant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 RGC 11 Sanctions

RGC 11.1 We reserve the right to impose financial sanctions and/or additional measures if You do not comply with Your obligations as set out in thes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 and any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

RGC 11.2 If the End of Award Report (if required) or the Financial Expenditure Statement is not received within 3 months of the end of the Grant Period, UKRI will recover 20% of expenditure incurred on the Grant. All payments will be recovered if the report or statement is not received within 6 months of the end of the Grant. You may appeal against a sanction, but must do so within 60 days of the pay run in which the sanction was imposed.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 제재

(RGC 11.1) 표준 보조금 약관 및 특별 보조금 약관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UKRI는 재정적 제재 및/또는 추가적 조치를 부가할 권리가 있다.

(RGC 11.2) 보조금 종료 보고서(요구되는 경우) 또는 지출 명세서를 보조금 지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UKRI는 보조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출액의 20%를 회수하고, 6개월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지급금을 회수한다.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재가 부과된 해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사기 행위의 관리 감독

-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등은 '사기 행위'에 해당되며, 매 12개월마다 사기 위험의 평가 활동이 이루어짐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8.1.)

<표 15>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8.1

The UKRI Counter Fraud and Bribery Policy 8. Fraud Risk Management and Fraud Risk Assessment (FRA)

8.1. UKRI will adopt a risk-based approach to counter fraud. A fraud risk assessment will be carried out within the principles of the UKRI Risk Management Policy and reviewed every 12 months. The Head of Risk and Counter Fraud will agree a programme of fraud risk reviews to inform the FRA. The fraud strategy will reflect those areas of high risk with associated activities to address and reduce the risk. Key areas of fraud include:

- Duplicate Research Funding
- Claim for costs covered by other Government schemes
- UK Grants & Awards Payments
- International Grants & Payments
- Procurement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False Expenses
- Conflicts of Interest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8. 사기 위험 관리 및 평가(FRA)

8.1. UKRI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다. 사기 위험 평가는 UKRI 위험 관리 정책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12개월마다 검토된다. 사기 위험 및 사기 방지 책임자는 사기 위험 검토 프로그램에 동의하여 FRA에 알린다. 사기 방지 전략에는 위험을 해결하고 축소하기 위한 관련 활동과 함께 고위험 영역이 반영된다. 사기 위험이 있는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중복된 연구비 지원
- 다른 정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는 비용 청구
- 영국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 국제 보조금 및 지급금
- 조달 및 공급망 관리
- 허위 비용 청구
- 이해 상충

❍ 제재의 주체

- UKRI 위원회는 연구기관이 표준 보조금 약관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적 제재 및/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RGC 11.1)

- UKRI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로 시도되었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기 행위를 조사하거나 조사 의뢰하며, ‘사기 대응 계획’에 따라 조치함(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7.1.)

<표 16>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7.1

The UKRI Counter Fraud and Bribery Policy 7. Fraud investigations

7.1. UKRI will investigate or commission investigations of all instances of actual, attempted or suspected fraud regardless of value and there are certain procedures that should be followed. The official response is the Fraud Response Plan (see Appendix 2). The Fraud Response Plan sets out UKRI’s procedures for ensuring that allegations and reports of fraud or dishonesty are properly followed up, are considered in a consistent and fair manner and that prompt and effective action is taken to:

• minimise the risk of any subsequent losses
• reduce any adverse operational effects
• improve the likelihood and scale of recoveries
• demonstrate that UKRI retains control in a crisis
• identify weaknesses in controls and processes and any lessons learned
• make a clear statement to staff and others that UKRI has a zero tolerance towards fraud and robust processes to guard against fraud.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7. 사기 행위 조사

7.1 UKRI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시도되었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기 사례를 조사하거나 조사 의뢰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절차가 있다. 이는 '사기 대응 계획'이다(Appendix 2 참조). 사기 대응 계획에는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와 신고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관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음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UKRI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후속 피해 위험의 최소화
• 모든 운영상의 악영향 축소
• 회수 가능성 및 회수 규모의 개선
• UKRI가 위기 상황에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
• 제어 기능과 절차상 취약점과 학습한 모든 내용의 파악
•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UKRI가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직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천명함.

- UKRI 위원회는 조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 중인 직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

<표 17>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주체)

UKRI Policy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4 GUIDELINES ON THE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UNACCEPTABLE RESEARCH CONDUCT The Councils reserve the right to take appropriate action about any duties being performed for them at any stage during the process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4.허용되지 않는 연구행위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위원회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직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재처분 종류

- 보조금 종료 보고서 또는 지출 명세서를 보조금 지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UKRI는 보조금 지출액의 20%를 회수하고, 6개월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지급금을 회수(RGC 11.2)

<표 18>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2

The UK Research Innovation fEC Grant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Grant RGC 11 Sanctions RGC 11.2 If the End of Award Report (if required) or the Financial Expenditure Statement is not received within 3 months of the end of the Grant Period, UKRI will recover 20% of expenditure incurred on the Grant. All payments will be recovered if the report or statement is not received within 6 months of the end of the Grant. You may appeal against a sanction, but must do so within 60 days of the pay run in which the sanction was imposed. **표준 보조금 약관 RGC 11 제재** (RGC 11.2) 보조금 종료 보고서(요구되는 경우) 또는 지출 명세서를 보조금 지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UKRI는 보조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출액의 20%를 회수하고, 6개월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지급금을 회수한다.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재가 부과된 해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 혐의자가 신청하였거나 연구자로 지명되어 고려 중인 신청서를 거부하고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참여제한), UKRI 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지원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연구개발비 회수)(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

<표 19>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종류)

UKRI Policy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4 GUIDELINES ON THE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UNACCEPTABLE RESEARCH CONDUCT If, as a result of any internal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an institution, court proceedings, disciplinary proceedings, or other proceedings heard by a competent tribunal, the individual is foun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research misconduct, either in an application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ation), or in carrying out the research, Research Councils reserve the right to: • Reject any application under consideration on which the individual is a named applicant or researcher; and/or • Withdraw any funding which the RO is receiving from the Research Council(s) in connection with research being carried out by the individual; and/or •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ubmitting any further applications for funding to the Research Council(s), for any period of time, including indefinitely; and/or • Reclaim from the institution any and all money awarded by the Research Councils for projects involving that individual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4. 허용되지 않는 연구행위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내부 조사, 법원 절차, 징계 절차 또는 관할 재판소에서 심리한 기타 절차의 결과로 혐의 대상자가 신청서(증빙 서류 포함) 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연구위원회는 다음을 행할 권리가 있다: • 혐의 대상자가 지원자 또는 연구자로 기재되어 있는 심사 중인 모든 신청서를 반려한다; 및/또는

• 혐의 대상자가 수행 중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위원회(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모든 지원금을 철회한다; 및/또는
• 무기한을 포함한 모든 기간 동안 혐의 대상자의 연구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을 금지한다; 및/또는
• 혐의 대상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위원회가 지급한 모든 지원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 제재처분 절차(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

-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연구기관의 초기 조사(Screening enquiries)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함. 초기 조사 단계에서 연구기관은 i) 공식 조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제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ii) 연구기관의 고위 책임자가 제보자 및 구성원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연구기관의 고위 책임자는 조사관을 임명하여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여야 함(formal investigation).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혐의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직된 경우 관련 자금 지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공식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공식 징계가 제기됨

-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심리하고 혐의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하여,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여야 함(Procedures for formal disciplinary procedures). 혐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법률 대리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연구기관은 혐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UKRI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29)]

<표 20>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제재처분 절차)

UKRI Policy Guidelines on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4 GUIDELINES ON THE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UNACCEPTABLE RESEARCH CONDUCT

29) UKRI 위원회는 연구기관이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특정 사안뿐 아니라 해당 연구기관의 자금 지원 신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제4조 Imposition of sanctions and penalties)

Imposition of sanctions and penalties

Institutions must have in place a clear sanctions policy against an individual in instances where an allegation is upheld and must inform the relevant Research Council(s) of sanctions put in place in cases involving individuals in receipt of Research Councils funding.

If an RO fail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such that when investigating individual cases:

• The investigation into an allegation is prejudiced, suspended or not completed and/or

• It does not correctly follow its own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of the allegation

The funding Research Council(s) reserve(s) the right to revoke awards and/or reject existing applications.

If an RO fail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such that:

• It is not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and expectations outlined in this policy and/or

• It persistently fails correctly to follow its own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and/or

• Persistent research misconduct has been committed by individuals from that institution applying for, or in receipt of, funding from any Research Council

The Research Councils reserve the right, in addition to imposing any sanctions in respect of specific cases, to suspend any further applications from that RO.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If, as a result of any internal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an institution, court proceedings, disciplinary proceedings, or other proceedings heard by a competent tribunal, the individual is foun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research misconduct, either in an application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ation), or in carrying out the research, Research Councils reserve the right to:

• Reject any application under consideration on which the individual is a named applicant or researcher; and/or

• Withdraw any funding which the RO is receiving from the Research Council(s) in connection with research being carried out by the individual; and/or

•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ubmitting any further applications for funding

to the Research Council(s), for any period of time, including indefinitely; and/or

• Reclaim from the institution any and all money awarded by the Research Councils for projects involving that individual

If, following any investigations, the individual is found not to have committed an act of research misconduct, or the allegation is withdrawn, the institution must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and make the outcome clear to all who have been involved. If the allegation was made publicly, the institution must make public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Investigators should also make clear whether or not they believe the allegation was made in good faith. If it was, the interests of the complainant must also be protected, in keeping with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If the investigators suspect that the allegation was malicious this would constitute misconduct and should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cedures, within the guidelines described in section 4.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4. 허용되지 않는 연구행위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재 및 벌칙의 부과

연구기관은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해당 개인에게 명확한 제재 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연구 자금을 받은 개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위원회에 이러한 제재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기관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혐의에 대한 조사가 편파적이거나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자체 조사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위원회는 연구 자금을 철회하거나 기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원칙과 기대를 따르지 않거나

• 혐의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따르지 않거나

•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위원회 자금에 신청했거나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구위원회는 특정 사례와 관련된 제재 조치 외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추가 신청을 중단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조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내부 조사, 법원 절차, 징계 절차 또는 관할 재판소에서 심리한 기타 절차의 결과로 혐의 대상자가 신청서(증빙 서류 포함) 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연구위원회는 다음을 행할 권리가 있다:
• 혐의 대상자가 지원자 또는 연구자로 기재되어 있는 심사 중인 모든 신청서를 반려한다; 및/또는
• 혐의 대상자가 수행 중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위원회(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모든 지원금을 철회한다; 및/또는
• 무기한을 포함한 모든 기간 동안 혐의 대상자의 연구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을 금지한다; 및/또는
• 혐의 대상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위원회가 지급한 모든 지원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다. 국제공동연구 및 제재에 관한 UKRI의 정책

UKRI는 R&D에 있어 국제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UKRI는 국제전략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는 인재과 커리어, 지역, 아이디어, 혁신, 영향력, 세계적 수준의 조직이라는 6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성, 연결성, 회복력과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30] 이를 위하여 해외 연구자가 영국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Project Co-lead), 영국과 해외 과학자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기금(International Science Partnerships Fund) 운용하는 외에도 인력 파견 및 체류 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연구자간의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1]

국제공동연구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특화된 별도의 제재 법령이나 규정은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와 동일한 가이드 및 지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UKRI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조작, 위조, 표절)에 더하여 허위진술, 고의 · 중과실에 의한 주의 의무 위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면서, 사기 행위, 보조금 지출 보고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재 사유 및 세부 조치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UKRI의 정책 및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며, UKRI 및 산하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다만 조치 대상 행위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까지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0) https://www.ukri.org/wp-content/uploads/2022/10/UKRI-300922-InternationalStrategicFramework.pdf

31) https://www.ukri.org/what-we-do/international-funding/how-we-support-international-collaboration/

3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개요

EU는 1983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을 추진하여 왔으며, Horizon Europe은 전신인 Horizon 2020의 뒤를 이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95.5억 유로를 투자, 연구를 지원하는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나.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체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사업별로 계약 내용과 지침이 정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별 표준계약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재 처분 관련 규정으로는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32] 및 「Regulation (EU, Euratom) 2988/95」이 있다.

동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제재 수단으로는 참여배제 및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파산이나 세금 미납 등 재무적 불안정 상태가 확인되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EU의 지원을 받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제재 사유 발생시에는 기지급한 자금의 환수나 제재 조치의 공표 등이 수반될 수 있다.

<표 21> EU Horizon Europe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발췌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Section 2 Early - detection and exclusion system** **Article 135 Protection of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by means of detection of risks, exclusion and imposition of financial penalties** 1. In order to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the Commission shall set up and operate an early-detection and exclusion system. The purpose of such a system shall be to facilitate: (a) the early detection of persons or ent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hich pose a risk to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32)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의 정식명칭은 Financial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general budget of the Union으로, EU 및 EURATOM의 예산과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위 규정은 이후 Regulation (EU, Euratom) 2988/95, Regulation (EU) 2020/1294 등을 통해 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b) the exclusion of persons or ent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hich are in one of the exclusion situ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36(1);
(c) the imposition of a financial penalty on a recipient pursuant to Article 138.

규정 (EU, 유라톰) 2018/1046

제2장 조기 발견 및 배제 시스템

제135조 위험 조기 발견, 배제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는 조기 발견 및 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는 것이다.
(a)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2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의 조기 발견;
(b) 제2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가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된 배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단체의 배제;
(c) 제138조에 따라 수취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Article 136 Exclusion criteria and decisions on exclusions

1.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shall exclude a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from participating in award procedures governed by this Regulation or from being selected for implementing Union funds where that person or entity is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xclusion situations:
(a) the person or entity is bankrupt, subject to insolvency or winding-up procedures, its assets are being administered by a liquidator or by a court, it is in an arrangement with creditors, its business activities are suspended, or it is in any analogous situation arising from a similar procedure provided for under Union or national law;
(b)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or a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the person or entity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payment of taxes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c)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or a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the person or entity is guilty of grave professional misconduct by having violated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or ethical standards of the profession to which the person or entity belongs, or by having engaged in any wrongful conduct which has an impact on its professional credibility where such conduct denotes wrongful intent or gross negligence, including, in particular, any of the following:
(i) fraudulently or negligently misrepresenting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absence of grounds for exclusion or the fulfilment of eligibility or selection criteria o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commitment;
(ii) entering into agreement with other persons or entities with the aim of distorting competition;
(iii)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v) attempting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during the award procedure;
(v) attempting to ob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may confer upon it undue advantages in the award procedure;
(d)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that the person or entity is guilty of any of the following:
(i) frau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 of Directive (EU) 2017/137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 and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inancial interests, drawn up by the Council Act of 26 July 1995 (2);
(ii) corruption, as defined in Article 4(2) of Directive (EU) 2017/1371 or active corrup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rawn up by the Council Act of 26 May 1997 (3), or conduct referred to in Article 2(1) of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568/JHA (4), or corruption as defined in other applicable laws;
(iii) conduct related to a criminal organis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841/JHA (5);EN L 193/9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30.7.2018
(1) Directive (EU) 2017/137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17 on the fight against fraud to the Union's financial interests by means of criminal law (OJ L 198, 28.7.2017, p. 29).
(2) OJ C 316, 27.11.1995, p. 48.
(3) OJ C 195, 25.6.1997, p. 1.
(4)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568/JHA of 22 July 2003 on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OJ L 192, 31.7.2003, p. 54).
(5)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841/JHA of 24 October 2008 on the fight against organised crime (OJ L 300, 11.11.2008, p. 42).
(iv)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3), (4) and (5) of Directive (EU) 2015/84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
(v) terrorist offences or offences linked to terrorist activities,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3 of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475/JHA (2), respectively, or inciting, aiding, abe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such offenc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at Decision;
(vi) child labour or other offences concern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3);
(e) the person or entity has shown significant deficiencies in complying with main oblig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a legal commitment financed by the budget which has:

(i) led to the early termination of a legal commitment;
(ii) led to the application of liquidated damages or other contractual penalties; or
(iii) been discovered by an authorising officer, OLAF or the Court of Auditors following checks, audits or investigations;
(f)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or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the person or entity has committed an irregular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2) of Council Regulation (EC, Euratom) No 2988/95 (4);
(g)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or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the person or entity has created an entity in a different jurisdiction with the intent to circumvent fiscal, social or any other legal oblig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its registered office, central administration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h) it has been established by a final judgment or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an entity has been created with the intent referred to in point (g).

제136조 제외 기준 및 제외 결정

1. 담당자는 제135조(2)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제외 상황 중 하나 이상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지원 절차에 참여하거나 EU기금을 사용하도록 선정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a)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파산하거나, 부실 또는 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자산이 청산인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맺거나,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EU 또는 국가법에 따라 규정된 유사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경우;
(b)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라 세금 또는 사회 보장 기여금 납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최종 판결 또는 최종적인 행정 결정에 의해 증명된 경우;
(c)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속한 직종의 관련 법률, 규정, 윤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해당 직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에 관여하여 중대한 직업적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최종 판결 또는 최종적인 행정 결정에 의해 증명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나타내는 경우, 특히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i) 제외 근거의 부재 확인 또는 적격성 또는 선정 기준의 충족 또는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 또는 과실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
(ii) 경쟁을 왜곡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ii)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iv) 지원 절차에서 담당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v) 지원 절차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
(d) 최종 판결에 의해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중 하나에 대해 유죄임이 입증된 경우:
(i)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7/1371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사기(1) 및 1995년 7월 26일 이사회법에 의해 작성된 유럽 공동체의 재정적 이익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2)에 정의된 사기;
(ii) 지침(EU) 2017/1371 제4조(2)에 정의된 부패 또는 1997년 5월 26일 이사회법에 의해 작성된 유럽 공동체 공무원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 공무원을 포함하는 부패 퇴치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의미 내에서의 적극적 부패(3) 또는 이사회 프레임워크 결정 2003/568/JHA

제2조(1)에 언급된 행위(4) 또는 기타 해당 법률에 정의된 부패;
(iii) 이사회 프레임워크 결정 2008/841/JHA(5) 제2조에 언급된 범죄 조직과 관련된 행위;유럽연합 관보 EN L 193/94 2018.7.30
(1) 형법을 통한 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2017년 7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7/1371(OJ L 198, 28.7.2017, p. 29).
(2) OJ C 316, 27.11.1995, p. 48.
(3) OJ C 195, 25.6.1997, p. 1.
(4) 민간 부문의 부패 퇴치에 관한 2003년 7월 22일의 이사회 기본 결정 2003/568/JHA(OJ L 192, 31.7.2003, p. 54).
(5) 조직범죄 퇴치에 관한 2008년 10월 24일의 이사회 기본 결정 2008/841/JHA(OJ L 300, 11.11.2008, p. 42).
(iv)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EU) 2015/849 제1조(3), (4) 및 (5)의 의미 내에서의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1);
(v) 각각 이사회 프레임워크 결정 2002/475/JHA(2)의 제1조 및 제3조에 정의된 테러 범죄 또는 테러 활동과 관련된 범죄, 또는 해당 결정의 제4조에 언급된 해당 범죄를 사주, 지원, 방조 또는 시도하는 행위;
(vi)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36/EU(3)의 제2조에 언급된 아동 노동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타 범죄;
(e)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된 법적 공약 이행에 있어 주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상당한 결함을 보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함
(i) 법적 약정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경우;
(ii) 벌금 또는 기타 위약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iii) 승인 담당자, OLAF 또는 감사원이 점검, 감사 또는 조사 후 발견한 경우;
(f)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이사회 규정(EC, Euratom) 제2988/95호(4) 제1조(2)에 따른 규칙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에 의해 입증된 경우;
(g)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세금, 사회적 또는 기타 법적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등록 사무소, 중앙 관리 또는 주요 영업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 이외의 다른 관할 구역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이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으로 확인된 경우;또는
(h) 해당 단체가 (g) 항에 언급된 의도를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것이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으로 확인된 경우

Article 138 Financial penalties

1. In order to ensure a deterrent effect,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may, having regard, where applicabl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143, impose a financial penalty on a recipient with whom a legal commitment has been entered into and who is in an exclusion situation referred to in point (c), (d), (e) or (f) of Article 136(1).

Regarding the exclusion situations referred to in points (c) to (f) of Article 136(1), the financial penalty may be imposed as an alternative to a decision to exclude a recipient,

where such an exclusion would be disproportionate on the basis of the criteria referred to in Article 136(3).EN L 193/9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30.7.2018
Regarding the exclusion situations referred to in points (c), (d) and (e) of Article 136(1), the financial penalty may be imposed in addition to an exclusion where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due to the systemic and recurrent conduct engaged in by the recipient with the intention to unduly obtain Union funds.
Notwithstand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a financial penalty shall not be imposed on a recipient wh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7 has disclosed that it is in an exclusion situation.
2. The amount of the financial penalty shall not exceed 10 % of the total value of the legal commitment. In the event of a grant agreement signed with a number of beneficiaries the financial penalty shall not exceed 10 % of the grant amount the beneficiary concerned is entitled to in accordance with the grant agreement.

Article 139 Duration of exclusion and limitation period
1. The duration of exclusion shall not exceed any of the following:
(a) the duration, if any, set by the final judgement or the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of a Member State;
(b) in the absence of a final judgment or a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i) five years for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 (d) of Article 136(1);
(ii) three years for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c) and (e) to (h) of Article 136(1).
A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shall be excluded as long as it is in one of the exclusion situati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36(1).
2. The limitation period for excluding and/or imposing financial penalties on a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Article 135(2) shall be five years calculated from any of the following:
(a) the date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exclusion or, in the case of continued or repeated acts, the date on which the conduct ceases,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b) to (e) and (g) and (h) of Article 136(1);
(b)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of a national jurisdiction or of the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b), (c), (d), (g) and (h) of Article 136(1).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interrupted by an act of a nation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 of OLAF, of EPPO in respect of those Member States participating in enhanced cooperation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7/1939, of the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143 of this Regulation or of any entity involved in budget implementation, if such an act is notified to the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of this Regulation and is relating to investiga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A new limitation period shall begin to run on the day following the interruption.

For the purpose of point (f) of Article 136(1) of this Regulation, the limitation period to exclude a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of this Regulation and/or impose financial penalties on a recipient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Regulation (EC, Euratom) No 2988/95 shall apply.
Where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of this Regulation concerned qualifies under several of the grounds listed in Article 136(1) of this Regulation, the limitation period applicable to the most serious of those grounds shall apply.

제139조 배제 기간 및 제한 기간
1. 배제 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a) 회원국의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에 의해 설정된 기간(있는 경우);
(b)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이 없는 경우:
(i) 제136조 제(1)항 (d)에 명시된 경우 5년;
(ii) 제136조 제(1)항의 (c) 및 (e) 내지 (h)에 언급된 경우 3년.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단체는 제136조 제(1)항 (a) 및 (b)에 명시된 배제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 배제된다.
2.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과징금 배제 및/또는 부과의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산정하여 5년으로 한다:
(a) 제136조 제(1)항 (b) 내지 (e), (g) 및 (h)에 명시된 경우, 배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행위의 경우 해당 행위가 중단되는 날;
(b) 제136조 제(1)항 (b), (c), (d), (g) 및 (h)에 언급된 경우에는 국가 관할권의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이 내려진 날.
제한 기간은 규정 (EU) 2017/1939에 따라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회원국, 본 규정 제143조에 명시된 패널 또는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단체와 관련하여, 국가 당국, 위원회, OLAF, EPPO의 행위가 본 규정 135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단체에 통보되고 해당 행위가 조사 절차 또는 사법 절차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중단된다. 새로운 제한 기간은 중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본 규정 제136조 제(1)항 (f)의 목적상, 본 규정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단체를 배제하거나 및/또는 규정 (EC, 유라톰) 2988/95 제3조에 규정된 수취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본 규정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단체의 행위가 본 규정 제136조 제(1)항에 열거된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중 가장 심각한 사유에 해당하는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Article 140 Publication of exclusion and financial penalties
1. In order to, where necessary, reinforce the deterrent effect of the exclusion and/or financial penalty, the Commission shall, subject to a decision of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publish on its websit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exclusion and, where applicable, the financial penalt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c) to (h) of Article 136(1):
(a) the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concerned;
(b) the exclusion situation;
(c) the duration of the exclusion and/or the amount of the financial penalty.EN
30.7.201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93/99
Where the decision on the exclusion and/or financial penalty has been taken on the basis of a preliminary classific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36(2), the publication shall indicate that there is no final judgment or, where applicable,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In such cases, information about any appeals, their status and their outcome, as well as any revised decision of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shall be published without delay. Where a financial penalty has been imposed, the publication shall also indicate whether that penalty has been paid.
The decision to publish the information shall be taken by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either following the relevant final judgment or, where applicable,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or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143, as the case may be. That decis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its notification to the person or entity concerned, as referred to in Article 135(2).
The information published shall be removed as soon as the exclusion has come to an end. In the case of a financial penalty, the publication shall be removed six months after payment of that penalty.
Where personal data are concerned,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45/2001 inform the person or entity concerned, as referred to in Article 135(2) of this Regulation, of their rights under the applicable data protection rules and of the procedures available for exercising those rights.
2.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publ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an investigation or of national judicial proceedings;
(b) where publication would cause disproportionate damage to the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35(2) concerned or would otherwise be disproportionate on the basis of the proportionality criteria set out in Article 136(3) and having regard to the amount of the financial penalty;
(c) where a natural person is concerned, unless the publication of personal data is justified by exceptional circumstances, inter alia, by the seriousness of the conduct or its impact on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In such cases, the decision to publish the information shall du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other right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C) No 45/2001.

제 140조 배제 및 과징금의 공고

1. 필요한 경우, 배제 및/또는 과징금의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담당 승인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제136조 제(1)항 (c) 내지 (h)에 언급된 경우의 배제 및 과징금(해당되는 경우)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a) 제135조 제(2)항에 명시된 해당인 또는 해당 단체의 이름;

(b) 배제사유;

(c) 배제 기간 및/또는 과징금의 금액. 2018. 7. 30.자 유럽연합 영문 관보 L 193/99

제136조 제(2)항에 언급된 preliminary classification에 근거하여 배제 및/또는 과징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공고에는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해당되는 경우)이 없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항소, 항소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와 담당 승인책임자의 수정된 결정은 지체 없이 공고되어야 한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과징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공고에 기재되어야 한다.

정보 공고 결정은, 관련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또는 제143조에 언급된 패널의 권고에 따라 담당 승인책임자가가 결정한다. 동 결정은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람 또는 단체에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된 정보는 배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삭제된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해당 공고가 삭제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담당 승인책임자는 규정(EC) 제45/2001호에 따라, 본 규정 제135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 또는 해당 단체에 해당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른 이들의 권리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

(a) 수사 또는 국가 사법 절차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b) 공고가 제135조 제(2)항에 명시된 사람 또는 단체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제136조 제(3)항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c) 자연인이 관련된 경우, 개인 정보의 공개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즉 특히 행위의 심각성이나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경우 정보 공개 결정은 규정(EC) 제45/200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권 및 기타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Article 141 Rejection from an award procedure

1.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shall reject from an award procedure a participant who:

(a) is in an exclusion situ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6;

(b) has misrepresented the information required as a condi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procedure or has failed to supply that information;
(c) was previously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used in the award procedure where this entails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including distortion of competition, that cannot be remedied otherwise.
The authorising officer responsible shall communicate to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award procedure the relevant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ntext of or resulting from the involvement of the participant in the preparation of the award procedure as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Prior to any such rejection the participant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e that its involvement in preparing the award procedure does not breac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2. Article 133(1) shall apply unless the rejection has been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point (a)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y a decision concerning exclusion taken with regard to the participant, following an examination of its observations.

제141조 보조금 지원 절차 참가 거부
1. 담당 승인책임자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의 보조금 지원 절차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
(a) 제136조에 따라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 절차 참여 조건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c) 이전에 보조금 지원 절차에 사용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으며, 이것이 경쟁 왜곡을 포함한 평등 대우 원칙 위반을 수반하며, 이를 다른 방법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승인책임자는 1항의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참여자가 보조금 지원 절차 준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교환된 관련 정보를 보조금 지원 절차의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위 거부에 앞서 참여자는 보조금 지원 절차 준비에 관여한 것이 평등 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2. 관찰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참여자에 대해 내려진 배제 관련 결정에 따라 본 조 제1항 제1호 (a)에 따라 위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

COUNCIL REGULATION (EC, EURATOM) No 2988/95 TITLE II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rticle 4
1. As a general rule, any irregularity shall involve withdrawal of the wrongly obtained advantage :
— by an obligation to pay or repay the amounts due or wrongly received,
— by the total or partial loss of the security provided in support of the request for an advantage granted or at the time of the receipt of an advance.
2. Applic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withdrawal of the advantage obtained plus, where so provided for, interest which may be determined on a flat-rate basis.
3. Acts which are established to have as their purpose the obtaining of an advantage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the Community law applicable in the case by artificially creat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obtaining that advantage shall result, as the case shall be, either in failure to obtain the advantage or in its withdrawal.
4.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not be regarded as penalties

유럽이사회 규정 (EC, 유라톰) No. 2988/95
TITLE II 행정 조치 및 벌칙
제4조
1.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행위에는:
—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 또는 잘못 수령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에 따라,
— 제공된 이익에 대하여 또는 선급금 수령 시점에 요청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에 따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환수가 수반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은 취득한 이익의 환수와,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정률로 결정될 수 있는 이자로 제한된다.
3. 해당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공동체법(Community law)의 목적에 반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한 행위는 해당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환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본 조에 규정된 조치는 벌칙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rticle 5
1. Intentional irregularities or those caused by negligence may lead to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penalties :
(a) payment of an administrative fine ;
(b) payment of an amount greater than the amounts wrongly received or evaded, plus interest where appropriate ; this additional sum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 percentage to be set in the specific rules, and may not exceed the level strictly necessary to constitute a deterrent ;
(c) total or partial removal of an advantage granted by Community rules, even if the operator wrongly benefited from only a part of that advantage ;
(d) exclusion from, or withdrawal of, the advantage for a period subsequent to that of the irregularity ;
(e) temporary withdrawal of the approval or recognition necessary for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aid scheme ;
(f) the loss of a security or deposit provided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by rules or the replenishment of the amount of a security wrongly

released ;

(g) other penalties of a purely economic type, equivalent in nature and scope, provided for in the sectoral rules adopted by the Council in the light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sectors concerned and in compliance with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by the Council.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sectoral rules existing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other irregularities may give rise only to those penalties not equivalent to a criminal penalty that ar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 provided that such penalties are essential to ensure correct application of the rules.

제5조

1.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정 처벌으로 이어질 수 있다:

(a) 행정 과태료의 납부;

(b)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피한 금액보다 큰 금액과 적절한 경우 이자를 더한 금액의 납부; 이러한 추징금은 특정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억지력을 구성하는데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c) 운영자가 공동체 규칙에 의해 부여된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이익을 받았더라도 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거;

(d) 부정행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익 배제 또는 이익의 환수;

(e) 공동체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승인 또는 인정의 일시적인 철회;

(f)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 또는 보증금의 상실 또는 잘못 출금된 담보 금액의 보충;

(g) 관련 부문의 특정 요건에 비추어, 그리고 이사회가 위원회에 부여한 이행 권한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부문별 규칙에 규정된 성격과 범위가 동등한, 순수한 경제적 유형의 기타 처벌.

2. 본 규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부문별 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타 부정행위는 제1항에서 규정된 형사 처벌과 동등하지 않은 처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단, 이러한 처벌은 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Article 6

1. Without prejudice to the Community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dopted on the basis of the sectoral rules existing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the imposition of financial penalties such as administrative fines may be suspended by dec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if criminal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in connection with the same facts. Suspen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all suspend the period of limi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3 .

2. If the criminal proceedings are not continued, the suspended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all be resumed.
3. When the criminal proceedings are concluded, the suspended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all be resumed, unless that is precluded by general legal principles.
4. Whe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resume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 penalty at least equivalent to that prescribed by Community rules is imposed, which may take into account any penalty imposed by the judicial authority on the same person in respect of the same facts.
5. Paragraphs 1 to 4 shall not apply to financial penaltie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financial support systems and may be applied independently of any criminal penalties, if and in so far as they are not equivalent to such penalties.

제6조
1. 본 규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부문별 규칙에 근거하여 채택된 공동체 행정 조치 및 벌칙을 침해하지 않고, 동일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정 과태료와 같은 과징금의 부과가 정지될 수 있다. 행정 절차의 정지는 제3조에 규정된 제척 기간을 정지시킨다.
2. 형사 절차가 계속되지 않으면 정지된 행정 절차가 재개된다.
3. 형사 절차가 종결되면 일반 법률 원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정지된 행정 절차가 재개된다.
4. 행정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 행정 당국은 동일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 당국이 동일인에게 부과한 처벌을 고려하여, 최소한 공동체 규칙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5. 1항 내지 4항은 재정 지원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처벌과 동등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Article 7
Community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may be applied to the economic operators referred to in Article 1 , namely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and the other entities on which national law confers legal capacity who have committed the irregularity and to those who are under a du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rregularity or to ensure that it is not committed .

제7조
공동체 행정 조치와 벌칙은 제1조에 언급된 경제 운영자, 즉 부정행위를 범한 자연인 또는 법인 및 국내법이 법적 능력을 부여한 기타 단체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부정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프로그램별 표준 계약에 반영된다. 대표적인 표준 계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Horizon Europe Model Grant Agreement[33)]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모델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2024. 1. 기준 모델 계약서 중 제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모델계약서 제34조는 Financial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 따라 EU의 지원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inancial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 따르면, 심각한 직업적 비행, 의무 위반, 사기, 부패, 부정행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직접적 비행, 의무 위반, 사기, 부정행위는 동시에 재정적 제재 사유로 인정된다. 위 조치들은 단순한 계약상 조치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는 EUROP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표 22> MGA(모델계약서)의 재정적 제재조항

ARTICLE 34 —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OTHER MEASURES Nothing in this Agreement may be construed as preventing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i.e. exclusion from EU award procedures and/or financial penalties) or other public law measures, in addition or as an alternative to the contractual measure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see, for instance, Articles 135 to 145 EU Financial Regulation 2018/1046 and Articles 4 and 7 of Regulation 2988/9546) 제34조 – 행정 제재 및 기타 조치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본 계약에 규정된 계약상의 조치에 추가되거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 (EU 보조금 수여 절차 및/또는 과징금) 또는 기타 공법상 조치의 채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EU Financial Regulation 2018/1046 제135조 내지 제145조 및 규정 2988/9546 제4조 및 제7조 참조).

참고로 EU Commission H2020 Model Grant Agreement for Multi Beneficiary 중 제재처분에 관한 내용은 △ 수혜자가 중대한 오류, 부정, 사기를 범하였거나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나 제안서 제출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재사유로 규정하면서, △ 유럽집행위원회(EU)가 △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정지, 종료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aga_en.pdf

<표 23>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GENERAL MULTI-BENEFICIARY MODEL GRANT AGREEMENT FOR THE HORIZON 2020 PROGRAMME ARTICLE 45 —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ENALTIES 45.1 Conditions Under Articles 109 and 131(4) of the Financial Regulation No 966/2012, the [Commission][Agency] may impos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enalties if a beneficiary: (a) has committed substantial errors, irregularities or fraud or is in serious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or (b) has made false declarations about information required under the Agreement or for the submission of the proposal (or has not supplied such information). Each beneficiary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financial penalties imposed on it. Under Article 109(3) of the Financial Regulation No 966/2012, the [Agency or the] Commission may —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limits — publish decisions imposing administrative or financial penalties. **HORIZON 2020 프로그램 용 일반 복수 수혜자 모델 Grant Agreement** **제45조 — 행정 처벌 및 과징금** 45.1 조건 Financial Regulation No 966/2012의 제109조 및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기관]은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중대한 오류, 부정 또는 사기를 범하였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b)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나 제안서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 수혜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Financial Regulation No 966/2012, 제10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또는] 위원회는 특정 조건과 한도 내에서 행정 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EU Horizon Europe EURATOM[34] General Model Grant Agreement EIC Accelerator Contract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재 사유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행위, 수혜자가 보조금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등
- 제재 주체 : 유럽집행위원회(EU), 승인책임자(AO)이며, EC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기탐지 및 배제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함[35]

34) European Atomic Energy Commuty(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EU 회원국 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 및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는 기구로써, 원자력 기술과 관련한 R&D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제재 종류 :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36]에 따라 배제, 과징금 부과, 정보 공표를 할 수 있으며, 「Regulation (EU, Euratom) 2988/95」에 따라 부정취득 이익 회수, 과태료 납부 등 적용

- 제재 절차 :

  - 심사위원회는 EC가 임명한 고위책임자, EC의 상근대표 2인, AO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사안을 심사하여 권고안을 채택[37]

  - AO는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으면 예비 분류에 기초하여 수혜자를 배제하거나 과징금 부과,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38]

  - 적격성 또는 선정기준 충족에 관한 정보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행위등으로 배제된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하여, AO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낙찰 절차에 참여하거나 EU 기금 집행에 선정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음[39]

  - AO,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상황의 심각성, (b) 관련 행위 이후 경과된 시간; (c) 행위의 기간 및 재발; (d) 그 행위가 고의적인지 또는 입증된 과실의 정도; (e) 제한된 금액이 걸려 있는지 여부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함[40]

  - 억제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AO는 심사위원회 권고를 고려하여 배제된 수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 때 과징금은 법적 약정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41]

  - 억제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EC는 AO의 결정에 따라 '연구자 또는 기관, 배제사유, 배제기간 및 과징금' 등 조치사항을 공표. 단, 공표된 정보는 배제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과징금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삭제되어야 함[42]

□ European Commission, the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

35) Article 135(1)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36)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의 정식명칭은 Financial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general budget of the Union으로, EU 및 EURATOM의 예산과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위 규정은 이후 Regulation (EU, Euratom) 2988/95, Regulation (EU) 2020/1294 등을 통해 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37) Article 143(5)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38) Article 135(4)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39) Article 136(1)(c)(i)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40) Article 136(3)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41) Article 138(1), (2)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42) Article 140(1) of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

Grant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용자 가이드라인은 제재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재 사유 : 적격성 또는 선정기준 충족에 관한 정보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 경쟁을 왜곡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와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및 비밀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 종류 : 향후 계약 낙찰절차 참여배제 및 EU가 지원한 모든 계약 및 보조금으로부터 제외,[43] 보조금 계약 정지 및 해지, 금전적 제재(계약금의 10% 상한),[44] 수혜자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45]

<표 24> EU 보조금 계약 이행 가이드라인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19.2.12.6 Administrative sanctions 12(8)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other remedies laid down in the contract, a sanction of exclusion from all contracts and grants financed by the EU, may be imposed, after an adversarial procedure in lin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gulation, upon the beneficiary(ies) who, in particular, a) is guilty of grave professional misconduct, has committed irregularities or has shown significant deficiencies in complying with the main obligations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has been circumventing fiscal, social or any other applicable legal obligations,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an entity for this purpose. The duration of the exclusion shall not exceed the duration set by final judgement or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or, in the absence thereof, three years; b) is guilty of fraud, corruption, participation in a criminal organisation, money laundering, terrorist-related offences, child labour or trafficking in human beings. The duration of the exclusion shall not exceed the duration set by final judgement or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or, in the absence thereof, five years; 12(9) In the situations mentioned in Article 12(8), in addition or in alternative to the sanction of exclusion, the beneficiary(ies) may also be subject to financial penalties up to 10% of the contract value. 12(10) Where the contracting authority is entitled to impose financial penalties, it may deduct such financial penalties from any sums due to the beneficiary(ies) or call on the appropriate guarantee. 12(11) The decision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may be published on a

43) Article 19.2.12.6, 12(8) of the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44) Article 19.2.12.6, 12(9) of the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45) Article 19.2.12.6, 12(11) of the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dedicated internet-site, explicitly naming the beneficiary(ies).

Grant 계약 이행 – 사용자 안내서 19.2.12.6 행정 제재

12(8) 계약에 규정된 다른 구제수단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관련 금융 규정에 따른 당사자주의에 따른 절차 이후, EU가 재정 지원하는 모든 계약 및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제재가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수혜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a) 해당인이 중대한 업무상 위법 행위를 범하여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부정행위를 범하였거나, 계약 이행에 있어 주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재정적, 사회적, 또는 기타 관련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함). 배제 기간은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b) 해당인이 사기, 부패, 범죄 조직 가담, 자금 세탁, 테러 관련 범죄, 아동 노동 또는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배제 기간은 최종 판결 또는 최종 행정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9) 제12조 제(8)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해당 수혜자에게는 배제 제재조치에 추가적으로, 또는 동 조치를 대체하여,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10) 계약 당국이 과징금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계약 당국은 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해당 과징금을 공제하거나 적절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12(11) 행정 제재 부과 결정은 수혜자(들)의 이름을 명시하여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다. 제재처분 사례

- 연구기관: VeriGraft AB(스웨덴 생명공학 회사)[46]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보조금계약상 명시된 윤리적 원칙을 위반, 위법 행위 은폐)
  - 조치내용: 연구비 반환, 보조금계약 해지, 논문 철회
  - 경위 및 배경: European Innovation Council과 SMEs Executive Agency (Eismea)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로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연구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해 행정조치가 무효로 처리된 사례로, Horizon 2020의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맥락에서 체결된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제로서의 맞춤형 조직 공학 혈관: P-TEV」 프로젝트(이하 'P-TEV 프로젝트')의 보조금 계약에 대한 해지 무효가 문제된 사안.
  - 신청인(VeriGraft AB)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교수 A, B가 설립

4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62019TJ0688

한 재생의학 분야의 생명공학 회사이고 피신청인 European Innovation Council and SME Executive Agency(EISMEA)는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HORIZON 2020 중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평가, 보조금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The Executive Agen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ASME)라는 명칭으로 2014. 1. 1. 설립되었으나, 2021. 4. 1. 위 명칭으로 변경됨, 이하 총칭하여 'EISMEA').

- EISMEA는 2018. 11.경 P-TEV 프로젝트를 점검, 윤리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임상시험, 인체조직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전하고, 신청인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함.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EISMEA는 연구윤리 및 신청인의 공동설립자 A의 과거 연구부정행위(A는 2018년, 과거 연구(2010~2015년)에 있었던 부정행위로 인하여 10건 중 8건의 논문철회 및 소속기관에서의 징계가 문제된 적 있음)를 언급하며, 보조금 계약 50.3.1(f)에 명시된 보조금 계약 해지의 객관적 근거가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2019. 4.경 계약 종료를 통지함.

신청인은 1) 보조금 계약 조항(50.3.1(f))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함. 재판부는 A가 보조금의 수혜자가 아니었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후에 수혜자를 대신한 것도 아니므로 EISMEA가 A의 연구부정행위를 P-TEV 프로젝트 보조금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며, 방어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였지만 계약 위반 주장을 인용하면서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함.

라. 소결

EU는 세부사업에 따라 제재사유와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Regulation (EU, Euratom) 2018/1046」에 규정된 처분 조항을 인용하여 제재처분 내용을 결정한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승인책임자가 연구부정행위 등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치하는 점이,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 사유를 심의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다른 국가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EU 국가 기관이나 연구자 개인에 대한 제재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일본

가. R&D 관련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 체계

일본은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出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부처의 세부지침과 연구개발사업의 계약(협약)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내각부의 「경쟁적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47](이하 **'경쟁연구비 지침'**)을 공통지침으로 문부과학성[48], 경제산업성[49], 후생노동성[50]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관리하는 주요 정부부처는 내각부 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한다.[51]

나. 제재처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경쟁연구비 지침에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제재처분 사유**

- 부정사용, 부정수급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하 '부정사용 등 행위'라 함)와 조작, 위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모두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경쟁연구비 지침 제3, 4조)
- 부정사용이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쟁연구비 교부 결정 내용 및 이에 부수된 조건을 위반한 사용'을, 부정수급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적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를, 선관주의의무란 '부정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47) 「競争的研究費の適正な執行に関する指針(2021)」, 내각부

48)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14)」(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문부과학성

49) 「研究活動の不正行為への対応に関する指針(2015)」(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지침), 경제산업성

50) 「厚生労働分野の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17)」(후생노동분야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후생노동성

51) https://www8.cao.go.jp/cstp/compefund/

주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함

〈표 25〉 경쟁연구비 지침(제재처분 사유)

競争的研究費の適正な執行に関する指針 **3.不正使用及び不正受給への対応（別表１）** 関係府省は、競争的研究費の不正使用又は不正受給を行った研究者及びそれに共謀した研究者や、不正使用又は不正受給に関与したとまでは認定されなかったものの、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事業を行うべき義務（以下、「善管注意義務」という）に違反した研究者に対し、以下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なお、独立行政法人等が有する競争的研究費については、同様の措置を講ずるよう主務省から当該法人に対して要請するものとする。 **4. 研究上の不正行為への対応（別表２）** 関係府省は、競争的研究費による研究論文・報告書等において、研究上の不正行為（捏造、改ざん、盗用）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場合、以下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なお、独立行政法人等が有する競争的研究費については、同様の措置を講ずるよう主務省から当該法人に対して要請するものとする。 **3. 부정사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별표1)** 관계부처는 경쟁적 연구비를 부정사용 또는 부정수급한 연구자와 이에 공모한 연구자, 부정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할 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경쟁적 연구비에 대하여는, 주무부처가 독립행정법인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4.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별표2)** 관계부처는 경쟁적 연구비에 의한 연구논문・보고서등에서 연구부정행위(조작, 위조, 표절)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경쟁적 연구비에 대하여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법인에 요청한다.

❍ 제재처분 주체

- 정부부처는 부정사용 등 행위와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거나 연구비 신청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독립행정법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경쟁연구비 지침 제3, 4조)

❍ 제재처분 종류

-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비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더하여 다른 부처 · 다른 연구비 담당 부서에 부정사용 등 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개요(연구자명, 기관명, 소속기관, 과제명, 부정행위 내용 및 조치내용 등)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사용 등 행위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단 그 취지를 공모요령에 명시해두어야 함)

❍ 사유별 참여제한 및 환수 기준

- 내각부는 제재처분 사유 및 정도, 대상에 따라 연구비 신청자격의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함(경쟁연구비 지침 별표 1)

<표 26> 경쟁연구비 지침(제재처분 기준)

(경쟁연구비 지침 별표1)

<table>
<tr><th>제재처분 대상</th><th colspan="2">부정사용의 정도</th><th>제한기간</th></tr>
<tr><td rowspan="4">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연구자와 그와 공모한 연구자</td><td colspan="2">1.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td><td>10년</td></tr>
<tr><td rowspan="3">2. 1.항 이외의 경우</td><td>①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의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td><td>5년</td></tr>
<tr><td>② ① 또는 ③ 이외의 경우</td><td>2~4년</td></tr>
<tr><td>③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고 행위의 악질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52]</td><td>1년</td></tr>
<tr><td>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적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자와 그와 공모한 연구자</td><td colspan="2"></td><td>5년</td></tr>
<tr><td>부정사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선관주의의무에 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자[53]</td><td colspan="2"></td><td>1~2년</td></tr>
</table>

52)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고 행위의 악질성이 낮으며 부정사용액이 소액인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엄중주의' 통지함

53)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고, 행위의 악질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엄중주의' 통지함

(경쟁연구비 지침 별표2)

<table>
<tr><th colspan="3">제재처분 대상</th><th>부정행위의 정도</th><th>제한기간</th></tr>
<tr><td rowspan="5">부정행위 관여자</td><td colspan="2">1. 연구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등 특히 악질적인 자</td><td></td><td>10년</td></tr>
<tr><td rowspan="3">2. 부정행위가 있었던 연구에 관한 논문 등의 저자</td><td rowspan="2">해당 논문 등의 책임을 지는 저자
(감수 책임자, 대표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는 자)</td><td>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이 크고, 행위의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5~7년</td></tr>
<tr><td>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이 작고, 행위의 악질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3~5년</td></tr>
<tr><td>상기 이외의 자</td><td></td><td>2~3년</td></tr>
<tr><td colspan="2">3. 1, 2.항을 제외한 부정행위 관여자</td><td></td><td>2~3년</td></tr>
<tr><td colspan="3" rowspan="2">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연구에 관한 논문 등에 책임을 지는 저자
(감수 책임자, 대표저자 또는 이들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는 자)</td><td>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이 크고, 행위의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2~3년</td></tr>
<tr><td>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이 작고, 행위의 악질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1~2년</td></tr>
</table>

- 정부부처는 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된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단 그 취지를 공모요령에 명시해두어야 함)

❍ 공표

- 각 부처의 세부지침과 절차에 따라, 부정사용 등 행위·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된 연구자들의 성명, 소속, 사건의 개요, 행위·조치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독립행정법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경쟁연구비 지침 제5조)

〈표 27〉 경쟁연구비 지침(부정사안 공표)

競争的研究費の適正な執行に関する指針 **５．不正事案の公表について** 関係府省は、不正事案については、各府省が定めるルールに基づき、不正事案の調査を行った機関において、予め定められた手続きに従い、不正に関与した者の氏名・所属、不正の内容、講じた措置の内容等の公表など適切に対応するように求めるとともに、上記の「不正使用及び不正受給への対応」及び「研究上の不正行為への対応」により応募資格を制限する場合、当該不正事案の概要（制度名、研究年度、不正の内容、講じられた措置の内容

等）を原則、速やかに公表するものとする。なお、独立行政法人等が有する競争的研究費については、同様の対応をするよう主務省から当該法人に対して要請するものとする。

5. 부정사안 공표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부정사안에 대하여, 각 부처가 정한 규칙에 따라 부정사안을 조사한 기관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정에 관여한 자의 성명・소속, 부정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기「부정사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과「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에 따라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사안의 개요(제도명, 연구년도, 부정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경쟁적 연구비에 대하여는, 주무부처가 독립행정법인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 제재처분 절차(문부과학성)[54]

- 고발 접수 체계: 연구기관[55]・배분기관은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여야 함. 연구・배분기관은 적절한 지위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고발 접수부터 조사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 정비, 운영하여야 함

- 조사기관 원칙: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고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복수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었거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였거나,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된 경우, 공동으로 조사.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관의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분기관이 조사를 실시(이하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조사기관'이라 함)

- 예비조사: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고발이유의 논리성・합리성, 문제된 연구성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 실험노트, 시료 등의 보존기간, 조사가능성 등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함(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조사기관은 미리 규정한 기간 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본조사(조사체계): 조사기관은 고발인・피고발인에 통지하고, 배분기관과 문부과학

54)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은 '고의 또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연구성과의 데이터나 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를 특정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경제산업성은 '특정부정행위'라고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을 뿐, 부정행위와 대응 절차를 문부과학성의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함. 본 보고서는 문부과학성 세부지침(「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제재처분 절차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부정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55)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대학, 기업 등)을, 배분기관은 경쟁연구비를 배분하는 기관(정부부처 및 소관 독립행정법인)을 의미함(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2쪽)

성에 본조사 실시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조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은 모두 고발인·피고발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조사위원의 정보를 고발인·피고발인에 통지하여,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본조사(중간보고): 조사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배분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조사(인정):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관여자·관여의 정도,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논문 등 각 저자의 역할을 정리, 인정함. 이 때 객관적인 연구부정행위 사실 및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발인의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음

- 본조사(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위 인정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고발인·피고발인에 통지하고, 배분기관과 문부과학성에 보고하여야 함

- 이의신청: 피고발인은 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재구성 여부 및 재조사·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기관은 배분기관과 문부과학성에 보고하여야 함

- 기타: 문부과학성은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 외에도 연구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관리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리조건'을 부여하여 책임체제를 정비, 확보함. 관리조건 이행이 미진한 경우, 연구기관에의 경쟁연구비 중 간접경비를 일부 삭감하거나 경쟁연구비 자체의 배분을 중지할 수도 있음

〈표 28〉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재처분 절차)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３節 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への対応** ３ 特定不正行為の告発の受付等 ３－１ 告発の受付体制 ① 研究・配分機関は、特定不正行為に関する告発（当該研究・配分機関の職員による告発のみならず、外部の者によるものを含む。以下同じ。）を受け付け、又は告発の意思を明示しない相談を受ける窓口（以下「受付窓口」という。）を設置しておくものとする。なお、このことは必ずしも新たに部署を設けることを意味しない。また、受付窓口について、客観性や透明性を向上する観点から、外部の機関に業務委託することも可能とする。 ② 研究・配分機関は、設置する受付窓口について、その名称、場所、連絡先、受付の方

法などを定め、当該研究・配分機関内外に周知する。
③　研究・配分機関は、告発者が告発の方法を書面、電話、ＦＡＸ、電子メール、面談など自由に選択できるように受付窓口の体制を整える。
④　研究・配分機関は、告発の受付や調査・事実確認（以下単に「調査」という。）を行う者が自己との利害関係を持つ事案に関与しないよう取り計らう。
⑤　告発の受付から調査に至るまでの体制について、研究・配分機関はその責任者として例えば理事、副学長等適切な地位にある者を指定し、必要な組織を構築して企画・整備・運営する。
３－２ 告発の取扱い
①　告発は、受付窓口に対する書面、電話、ＦＡＸ、電子メール、面談などを通じて、研究・配分機関に直接行われるべきものとする。
②　原則として、告発は顕名により行われ、特定不正行為を行ったとする研究者・グループ、特定不正行為の態様等、事案の内容が明示され、かつ不正とする科学的な合理性のある理由が示されているもののみを受け付ける。
③　②にかかわらず、匿名による告発があった場合、研究・配分機関は告発の内容に応じ、顕名の告発があった場合に準じた取扱い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告発があった研究・配分機関が調査を行うべき機関に該当しないときは、「４－１　調査を行う機関」により調査機関に該当する研究・配分機関に当該告発を回付する。回付された研究・配分機関は当該研究・配分機関に告発があったものとして当該告発を取り扱う。また、「４－１　調査を行う機関」により、告発があった研究・配分機関に加え、ほかにも調査を行う研究・配分機関が想定される場合は、告発を受けた研究・配分機関は該当する研究・配分機関に当該告発について通知する。
⑤　書面による告発など、受付窓口が受け付けたか否かを告発者が知り得ない方法による告発がなされた場合は、研究・配分機関は告発者（匿名の告発者を除く。ただし、調査結果が出る前に告発者の氏名が判明した後は顕名による告発者として取り扱う。以下同じ。）に、告発を受け付けたことを通知する。
⑥　告発の意思を明示しない相談については、相談を受けた機関はその内容に応じ、告発に準じてその内容を確認・精査し、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た場合は、相談者に対して告発の意思があるか否か確認するものとする。
⑦　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ようとしている、又は特定不正行為を求められているという告発・相談については、告発・相談を受けた機関はその内容を確認・精査し、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被告発者に警告を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告発・相談を受けた機関は、当該機関が被告発者の所属する研究機関でないときは、被告発者の所属する研究機関に事案を回付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発者の所属する研究機関でない機関が警告を行った場合は、当該機関は被告発者の所属する研究機関に警告の内容等について通知する。

３－３ 告発者・被告発者の取扱い
①　告発を受け付ける場合、個室で面談したり、電話や電子メールなどを窓口の担当職員以外は見聞できないようにしたりするなど、告発内容や告発者（「３－２　告発の取扱い」⑥及び⑦における相談者を含む。以下「３－３告発者・被告発者の取扱い」において同

じ。）の秘密を守るため適切な方法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研究・配分機関は、受付窓口に寄せられた告発の告発者、被告発者、告発内容及び調査内容について、調査結果の公表まで、告発者及び被告発者の意に反して調査関係者以外に漏えいしないよう、関係者の秘密保持を徹底する。
③　調査事案が漏えいした場合、研究・配分機関は告発者及び被告発者の了解を得て、調査中にかかわらず調査事案について公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告発者又は被告発者の責により漏えいした場合は、当人の了解は不要とする。
④　研究・配分機関は、悪意（被告発者を陥れるため、又は被告発者が行う研究を妨害するためなど、専ら被告発者に何らかの損害を与えることや被告発者が所属する機関・組織等に不利益を与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意思。以下同じ。）に基づく告発を防止するため、告発は原則として顕名によるもののみ受け付けることや、告発には不正とする科学的な合理性のある理由を示す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告発者に調査に協力を求める場合があること、調査の結果、悪意に基づく告発であっ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は、氏名の公表や懲戒処分、刑事告発があり得ることなどを当該研究・配分機関内外にあらかじめ周知する。
⑤　研究・配分機関は、悪意に基づく告発であることが判明しない限り、単に告発したことを理由に、告発者に対し、解雇、降格、減給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⑥　研究・配分機関は、相当な理由なしに、単に告発がなされたことのみをもって、被告発者の研究活動を部分的又は全面的に禁止したり、解雇、降格、減給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３－４　告発の受付によらないものの取扱い
①　「３－２　告発の取扱い」⑥による告発の意思を明示しない相談について、告発の意思表示がなされない場合にも、研究・配分機関の判断でその事案の調査を開始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学会等の科学コミュニティや報道により特定不正行為の疑いが指摘された場合は、当該特定不正行為を指摘された者が所属する研究機関に告発があった場合に準じた取扱い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特定不正行為の疑い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掲載されている（特定不正行為を行ったとする研究者・グループ、特定不正行為の態様等、事案の内容が明示され、かつ不正とする科学的な合理性のある理由が示されている場合に限る。）ことを、当該特定不正行為を指摘された者が所属する研究機関が確認した場合、当該研究機関に告発があった場合に準じた取扱い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４　特定不正行為の告発に係る事案の調査
４－１　調査を行う機関
①　研究機関に所属する（どの研究機関にも所属していないが専ら特定の研究機関の施設・設備を使用して研究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研究者に係る特定不正行為の告発があった場合、原則として、当該研究機関が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を行う。
②　被告発者が複数の研究機関に所属する場合、原則として被告発者が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を主に行っていた研究機関を中心に、所属する複数の研究機関が合同で調査

を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中心となる研究機関や調査に参加する研究機関については、関係研究機関間において、事案の内容等を考慮して別の定め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被告発者が現に所属する研究機関と異なる研究機関で行った研究活動に係る告発があった場合、現に所属する研究機関と当該研究活動が行われた研究機関とが合同で、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を行う。

④　被告発者が、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を行っていた際に所属していた研究機関を既に離職している場合、現に所属する研究機関が、離職した研究機関と合同で、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を行う。被告発者が離職後、どの研究機関にも所属していないときは、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を行っていた際に所属していた研究機関が、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を行う。

⑤　上記①から④までによって、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を行うこととなった研究機関は、被告発者が当該研究機関に現に所属している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誠実に調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⑥　被告発者が、調査開始のとき及び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を行っていたときの双方の時点でいかなる研究機関にも所属していなかった場合や、調査を行うべき研究機関による調査の実施が極めて困難であると、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の予算を配分した配分機関が特に認めた場合は、当該配分機関が調査を行う。この場合、本来調査を行うべき研究機関は当該配分機関から協力を求められたときは、誠実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研究機関は他の機関や学協会等の科学コミュニティに、また、配分機関は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の分野に関連がある機関や学協会等の科学コミュニティに、調査を委託すること又は調査を実施する上で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とき、「３－３　告発者・被告発者の取扱い」①から③まで及び「４　特定不正行為の告発に係る事案の調査」は委託された機関等又は調査に協力する機関等に準用されるものとする。

４－２　告発に対する調査体制・方法

（１）予備調査

①　「４－１　調査を行う機関」により調査を行う機関（以下「調査機関」という。）は、告発を受け付けた後速やかに、告発された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た可能性、告発の際示された科学的な合理性のある理由の論理性、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の公表から告発までの期間が、生データ、実験・観察ノート、実験試料・試薬など研究成果の事後の検証を可能とするものについての各研究分野の特性に応じた合理的な保存期間、又は被告発者が所属する研究機関が定める保存期間を超えるか否かなど告発内容の合理性、調査可能性等について予備調査を行う。調査機関は、下記（２）②の調査委員会を設置して予備調査に当たらせることができる。

②　告発がなされる前に取り下げられた論文等に対する告発に係る予備調査を行う場合は、取下げに至った経緯・事情を含め、特定不正行為の問題として調査すべきものか否か調査し、判断するものとする。

③　調査機関は、予備調査の結果、告発がなされた事案が本格的な調査をすべきものと判断した場合、本調査を行う。調査機関は、告発を受け付けた後、本調査を行うか否か決定

するまでの期間の目安（例えば、目安として３０日以内）を当該調査機関の規程にあらかじめ定めておく。
④　本調査を行わないことを決定した場合、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告発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調査機関は予備調査に係る資料等を保存し、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告発者の求めに応じ開示するものとする。

（２）本調査

① 通知・報告

（ア）本調査を行うことを決定した場合、調査機関は、告発者及び被告発者に対し、本調査を行うことを通知し、調査への協力を求める。被告発者が調査機関以外の機関に所属している場合は、その所属機関にも通知する。告発された事案の調査に当たっては、告発者が了承したときを除き、調査関係者以外の者や被告発者に告発者が特定されないよう周到に配慮する。
（イ）調査機関は、当該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本調査を行う旨報告する。
（ウ）調査機関は、本調査の実施の決定後、実際に本調査が開始されるまでの期間の目安（例えば、目安として３０日以内）を当該調査機関の規程にあらかじめ定めておく。

② 調査体制

（ア）調査機関は、本調査に当たっては、当該調査機関に属さない外部有識者を含む調査委員会を設置する。この調査委員会は、調査委員の半数以上が外部有識者で構成され、全ての調査委員は、告発者及び被告発者と直接の利害関係（例えば、特定不正行為を指摘された研究活動が論文のとおりの成果を得ることにより特許や技術移転等に利害があるなど）を有しない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イ）調査機関は、調査委員会を設置したときは、調査委員の氏名や所属を告発者及び被告発者に示すものとする。これに対し、告発者及び被告発者は、あらかじめ調査機関が定めた期間内に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異議申立てがあった場合、調査機関は内容を審査し、その内容が妥当であると判断したときは、当該異議申立てに係る調査委員を交代させるとともに、その旨を告発者及び被告発者に通知する。
（ウ）調査委員会の調査機関内における位置付けについては、調査機関において定める。

③ 調査方法・権限

（ア）本調査は、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に関する論文や実験・観察ノート、生データ等の各種資料の精査や、関係者のヒアリング、再実験の要請などにより行われる。この際、被告発者の弁明の聴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イ）告発された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た可能性を調査するために、調査委員会が再実験などにより再現性を示すことを被告発者に求める場合、又は被告発者自らの意思によりそれを申し出て調査委員会がその必要性を認める場合は、それに要する期間及び機会（機器、経費等を含む。）に関し調査機関により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これを行う。その際、調査委員会の指導・監督の下に行うこととする。
（ウ）上記（ア）、（イ）に関して、調査機関は調査委員会の調査権限について定め、関係者に周知する。この調査権限に基づく調査委員会の調査に対し、告発者及び被告発者などの関係者は誠実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調査機関以外の機関において調査がなされる場合、調査機関は当該機関に協力を要請する。協力を要請された当該機関は誠実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調査の対象となる研究活動

調査の対象には、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のほか、調査委員会の判断により調査に関連した被告発者の他の研究活動も含めることができる。

⑤ 証拠の保全措置

調査機関は本調査に当たって、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に関して、証拠となるような資料等を保全する措置をとる。この場合、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が行われた研究機関が調査機関となっていないときは、当該研究機関は調査機関の要請に応じ、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に関して、証拠となるような資料等を保全する措置をとる。これらの措置に影響しない範囲内であれば、被告発者の研究活動を制限しない。

⑥ 調査の中間報告

調査機関が研究機関であるときは、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の予算の配分又は措置をした配分機関等の求めに応じ、調査の終了前であっても、調査の中間報告を当該配分機関等に提出するものとする。

⑦ 調査における研究又は技術上の情報の保護

調査に当たっては、調査対象における公表前のデータ、論文等の研究又は技術上秘密とすべき情報が、調査の遂行上必要な範囲外に漏えいすることのないよう十分配慮する。

４－３ 認定

（１）認定

①　調査機関は、本調査の開始後、調査委員会が調査した内容をまとめるまでの期間の目安（例えば、目安として１５０日以内）を当該調査機関の規程にあらかじめ定めておく。

②　調査委員会は、上記①の期間を目安として調査した内容をまとめ、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たか否か、特定不正行為と認定された場合はその内容、特定不正行為に関与した者とその関与の度合い、特定不正行為と認定された研究活動に係る論文等の各著者の当該論文等及び当該研究活動における役割を認定する。

③　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なかったと認定される場合であって、調査を通じて告発が悪意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調査委員会は、併せてその旨の認定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認定を行うに当たっては、告発者に弁明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④　上記②又は③について認定を終了したときは、調査委員会は直ちにその設置者たる調査機関に報告する。

（２）特定不正行為の疑惑への説明責任

調査委員会の調査において、被告発者が告発された事案に係る研究活動に関する疑惑を晴らそうとする場合には、自己の責任において、当該研究活動が科学的に適正な方法と手続にのっとって行われたこと、論文等もそれに基づいて適切な表現で書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科学的根拠を示し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特定不正行為か否かの認定

①　調査委員会は、上記（２）により被告発者が行う説明を受けるとともに、調査によって得られた、物的・科学的証拠、証言、被告発者の自認等の諸証拠を総合的に判断して、

特定不正行為か否かの認定を行う。証拠の証明力は、調査委員会の判断に委ねられるが、被告発者の研究体制、データチェックのなされ方など様々な点から客観的不正行為事実及び故意性等を判断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なお、被告発者の自認を唯一の証拠として特定不正行為と認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②　特定不正行為に関する証拠が提出された場合には、被告発者の説明及びその他の証拠によって、特定不正行為であるとの疑いが覆されないときは、特定不正行為と認定される。また、被告発者が生データや実験・観察ノート、実験試料・試薬等の不存在など、本来存在するべき基本的な要素の不足により、特定不正行為であるとの疑いを覆すに足る証拠を示せないときも同様とする。ただし、被告発者が善良な管理者の注意義務を履行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責によらない理由（例えば災害など）により、上記の基本的な要素を十分に示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等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い。また、生データや実験・観察ノート、実験試料・試薬等の不存在などが、各研究分野の特性に応じた合理的な保存期間や被告発者が所属する、又は告発に係る研究活動を行っていたときに所属していた研究機関が定める保存期間を超えること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③　上記（２）の説明責任の程度及び上記②の本来存在するべき基本的要素については、研究分野の特性に応じ、調査委員会の判断に委ねられる。

（４）調査結果の通知及び報告

①　調査機関は、調査結果（認定を含む。以下同じ。）を速やかに告発者及び被告発者（被告発者以外で特定不正行為に関与したと認定された者を含む。以下同じ。）に通知する。被告発者が調査機関以外の機関に所属している場合は、その所属機関にも当該調査結果を通知する。

②　上記①に加えて、調査機関は、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当該調査結果を報告する※ 7。

③　悪意に基づく告発との認定があった場合、調査機関は告発者の所属機関にも通知する。

（５）不服申立て

①　特定不正行為と認定された被告発者は、あらかじめ調査機関が定めた期間内に、調査機関に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期間内であっても、同一理由による不服申立てを繰り返すことはできない。

②　告発が悪意に基づくものと認定された告発者（被告発者の不服申立ての審査の段階で悪意に基づく告発と認定された者を含む。この場合の認定については、上記（１）③を準用する。）は、その認定について、上記①の例により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不服申立ての審査は調査委員会が行う。その際、不服申立ての趣旨が新たに専門性を要する判断が必要とな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調査機関は、調査委員の交代若しくは追加、又は調査委員会に代えて他の者に審査をさせる。ただし、調査機関が当該不服申立てについて調査委員会の構成の変更等を必要とする相当の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④　特定不正行為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場合に係る被告発者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調査委員会（上記③の調査委員会に代わる者を含む。以下「（５）不服申立て」において

同じ。）は、不服申立ての趣旨、理由等を勘案し、その事案の再調査を行うか否かを速やかに決定する。当該事案の再調査を行うまでもなく、不服申立てを却下すべきものと決定した場合には、直ちに調査機関に報告し、調査機関は被告発者に当該決定を通知する。このとき、当該不服申立てが当該事案の引き延ばしや認定に伴う各措置の先送りを主な目的とすると調査委員会が判断するときは、調査機関は以後の不服申立てを受け付けないことができる。上記①の不服申立てについて、再調査を行う決定を行った場合には、調査委員会は被告発者に対し、先の調査結果を覆すに足る資料の提出等、当該事案の速やかな解決に向けて、再調査に協力することを求める。その協力が得られない場合には、再調査を行わず、審査を打ち切ることができる。その場合には直ちに調査機関に報告し、調査機関は被告発者に当該決定を通知する。

⑤　調査機関は、被告発者から特定不正行為の認定に係る不服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告発者に通知する。加えて、調査機関は、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報告する。不服申立ての却下及び再調査開始の決定を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⑥　調査委員会が再調査を開始した場合は、当該調査委員会を置く調査機関の規程にあらかじめ定める期間（例えば、目安として５０日）内に、先の調査結果を覆すか否かを決定し、その結果を直ちに調査機関に報告し、調査機関は当該結果を被告発者、被告発者が所属する機関及び告発者に通知する。加えて、調査機関は、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報告する。

⑦　上記②の悪意に基づく告発と認定された告発者から不服申立てがあった場合、調査機関は、告発者が所属する機関及び被告発者に通知する。加えて、調査機関は、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報告する。

⑧　上記②の不服申立てについては、調査委員会は当該調査委員会を置く調査機関の規程にあらかじめ定める期間（例えば、目安として３０日）内に再調査を行い、その結果を直ちに調査機関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調査機関は、当該結果を告発者、告発者が所属する機関及び被告発者に通知する。加えて、調査機関は、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及び文部科学省に報告する。

（６）調査結果の公表

①　調査機関は、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たとの認定があった場合は、速やかに調査結果を公表する。

②　調査機関は、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なかったとの認定があった場合は、原則として調査結果を公表しない。ただし、調査事案が外部に漏えいしていた場合及び論文等に故意によるものでない誤りがあった場合は、調査結果を公表する。悪意に基づく告発の認定があったときは、調査結果を公表する。

③　上記①、②の公表する調査結果の内容（項目等）は、調査機関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７）告発者及び被告発者に対する措置

①　特定不正行為が行われたとの認定があった場合、特定不正行為への関与が認定された者及び関与したとまでは認定されないが、特定不正行為が認定された論文等の内容について責任を負う者として認定された著者（以下「被認定者」という。）の所属する機関は、被認定者に対し、内部規程に基づき適切な処置をとるとともに、特定不正行為と認定され

た論文等の取下げを勧告するものとする。
②　　告発が悪意に基づくものと認定された場合、告発者の所属する機関は、当該者に対し、内部規程に基づき適切な処置を行う。

第４節 特定不正行為及び管理責任に対する措置

１ 特定不正行為に対する研究者、研究機関への措置

前節の特定不正行為について、配分機関等は、調査機関から本調査の実施の決定その他の報告を受けた場合は、以下のとおり、その事案に係る配分機関等が、当該調査機関に対して当該事案の速やかな全容解明を要請し、当該調査機関から提出される調査結果等を踏まえ、関係機関に対して必要な改善を求める。配分機関等は、前節の対象とする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を確認した場合は、研究者及び研究機関に以下の措置を講じる。
①　配分機関等は、調査機関から本調査の実施の決定その他の報告を受けた場合は、当該調査機関における調査が適切に実施されるよう、必要に応じて指示を行うとともに、速やかにその事案の全容を解明し、調査を完了させるよう要請する。
②　配分機関等は、調査の過程であっても、調査機関から特定不正行為の一部が認定された旨の報告があった場合は、必要に応じ、被認定者が関わる競争的資金等について、採択又は交付決定の保留、交付停止、関係機関に対する執行停止の指示等を行う。
③　配分機関等は、調査機関から特定不正行為を認定した調査結果が提出され、それを確認した場合は、当該調査結果の内容を踏まえ、以下の措置を講じるものとする。
（ア）措置の対象となる研究者
・特定不正行為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研究に係る論文等において、特定不正行為に関与したと認定された著者（共著者を含む。以下同じ。）・特定不正行為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研究に係る論文等の著者ではないが、当該特定不正行為に関与したと認定された者・特定不正行為に関与したとは認定されないものの、特定不正行為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研究に係る論文等の内容について責任を負う者として認定された著者
（イ）特定不正行為に係る競争的資金等の返還等
特定不正行為が確認された研究活動に係る競争的資金等において、配分機関は、上記（ア）の措置の対象となる研究者及び研究機関に対し、事案に応じて、交付決定の取消し等を行い、また、当該競争的資金等の配分の一部又は全部の返還を求める。なお、運営費交付金や私学助成等の基盤的経費は、特定の研究活動又は研究者ではなく、研究機関を対象に措置されるものであり、その管理は研究機関に委ねられている。このため、基盤的経費の措置により行われた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に関し、研究費の返還に関する取扱いは、本ガイドラインでは一律に対応を定めておらず、研究機関において適切な対応が求められる。
（ウ）競争的資金等への申請及び参加資格の制限
配分機関等は、上記（ア）の措置の対象となる研究者に対し、事案に応じて、競争的資金等への申請及び参加資格を制限する。競争的資金の配分により行われた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については、「競争的資金の適正な執行に関する指針」（平成17 年９月９日競争的資金に関する関係府省連絡会申し合わせ。以下「指針」という。）に基づき措置を講じるとともにその他の競争的資金等への申請及び参加資格も指針に準じて制限する。ま

た、その他の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競争的資金の配分により行われた研究活動に係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も、同様に、競争的資金等への申請及び参加資格を指針に準じて制限する。

＜＜配分機関等が実施する事項＞＞

〇調査機関から本調査の実施の決定その他の報告を受けた場合は、関係機関に対して必要な指示等を行うこと

〇特定不正行為に対する研究者、研究機関への措置を講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配分機関等の規程等を整備すること、及び配分機関等が講じる措置の内容や措置の対象となる研究者の範囲について、競争的資金等の公募要領や委託契約書（付属資料を含む。）等に記載し、研究者及び研究機関がそれをあらかじめ承知して応募又は契約するように取り計らうこと

２ 組織としての管理責任に対する研究機関への措置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を事前に防止するとともに、不正行為の疑いのある事案が発覚した場合に適切に対応することにより、公正な研究活動を推進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本ガイドラインでは、研究機関が責任を持って不正行為の防止に関わることで、不正行為が起こりにくい環境がつくられるよう対応の強化を図ることを基本としており、組織としての責任体制を明確化して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に適切に対応するための規程や体制の整備を求めている。これを踏まえ、文部科学省及び配分機関は、組織として研究機関の管理責任が果たされるよう、以下の措置を講じる。なお、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研究機関からの弁明の機会を設けるものとする。

（１）組織としての責任体制の確保

① 管理条件の付与

文部科学省は、以下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研究機関に対し、体制整備等の不備について改善事項及びその履行期限を示した管理条件を付す。また、文部科学省は、管理条件の履行状況について毎年度確認を行う。

（ア）「第５節　２　履行状況調査の実施」で掲げた研究機関に対する履行状況調査の結果、体制整備等に不備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場合

（イ）研究活動における特定不正行為が確認された研究機関において、体制整備等に改善を求める必要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場合

② 間接経費の削減

文部科学省が管理条件の履行状況について行う確認の結果において、管理条件の履行が認められないと文部科学省が判断した場合、競争的資金の配分機関は、その研究機関に対する競争的資金における翌年度以降の間接経費措置額を一定割合削減する。間接経費措置額の削減割合については、文部科学省による確認の結果に応じて、段階的に引き上げ、その上限を間接経費措置額の１５％とする。間接経費措置額の削減割合の基準については、文部科学省が別に定めることとする。

③ 配分の停止

間接経費を上限まで削減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を決定した後も、文部科学省が管理条件の履行が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場合は、競争的資金の配分機関は、その研究機関に対する翌年度以降の競争的資金の配分を停止する。なお、上記①から③までの措置の解除は、以

下によるものとする。
・①の措置は、研究機関において管理条件を着実に履行していると文部科学省が判断した時点で、文部科学省が解除する。
・②の措置は、研究機関において管理条件を着実に履行している、又は管理条件の履行に進展があると文部科学省が判断した場合、配分機関がその翌年度に解除する。
・③の措置は、研究機関において管理条件を着実に履行している、又は管理条件の履行に進展があると文部科学省が判断した時点で、配分機関が解除する。
（２）迅速な調査の確保
競争的資金の配分機関は、当該競争的資金の配分により行われた研究活動において特定不正行為の疑いがある事案が発覚したにもかかわらず、正当な理由なく研究機関による調査が遅れた場合は、当該競争的資金における翌年度以降の１か年度の間接経費措置額を一定割合削減する。間接経費措置額の削減割合については、上限を間接経費措置額の１０％とし、配分機関が個別に定めるものとする。
＜＜配分機関が実施する事項＞＞
〇組織としての管理責任に対する研究機関への措置を講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配分機関の規程等を整備すること、及び配分機関が講じる措置の内容について、競争的資金の公募要領や委託契約書（付属資料を含む。）等に記載し、研究機関がそれをあらかじめ承知して応募又は契約するように取り計らうこと

３ 措置内容の公表
文部科学省及び配分機関等は、上記１及び２に掲げる措置を決定したときは、これを速やかに公表する。

第５節 文部科学省による調査と支援
１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継続的な対応
文部科学省は、有識者による検討の場を設け、本ガイドラインの実施等に関してフォローアップする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本ガイドラインの見直し等を行う。
２ 履行状況調査の実施
文部科学省は、各研究機関における本ガイドラインを踏まえた体制整備の状況等を適切に把握するため、研究機関に対し定期的に履行状況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を公表する。履行状況調査は、書面、面接若しくは現地調査又はその組合せにより行う。履行状況調査の結果、体制整備等に不備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場合、当該研究機関に対し管理条件を付すなどにより指導・助言を行う。
３ 研究倫理教育に関するプログラムの開発推進
文部科学省は、日本学術会議や配分機関と連携し、研究倫理教育に関する標準的なプログラムや教材の作成を推進する。研究現場の実情や研究活動の多様性、研究分野の特性等も踏まえつつ、実効性の高い研究倫理教育に関するプログラムとするために支援を行い内容の改善を図る。
４ 研究機関における調査体制への支援
特定不正行為の疑いが生じた場合には、まず研究機関において調査を行うことになるが、

当該研究機関だけでは十分な対応が困難な場合も考えられる。このため、文部科学省は、研究機関において十分な調査を行える体制にないと判断する場合は、研究機関に対し適時助言を行うとともに、日本学術会議や配分機関と連携し、専門家の選定・派遣を行うなど調査を適切かつ円滑に進めるために必要な支援を行う。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절 연구활동 특정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3. 특정부정행위 고발 접수
3 – 1. 고발 접수 체제
① 연구・배분기관은 특정부정행위에 관한 고발(해당 연구・배분기관의 직원에의한 고발뿐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하거나 고발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한 상담을 접수할 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② 연구・배분기관은 설치한 접수창구의 명칭, 장소, 연락처,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연구・배분기관 내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배분기관은 고발인이 서면, 전화, FAX, 이메일, 면담 등 고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연구・배분기관은 고발 접수 또는 조사・사실확인(이하 단순히 '조사'라 함)을 수행하는 자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발 접수부터 조사까지의 체계에 관하여, 연구・배분기관은 그 책임자로 이사, 부학장 등 적절한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여 기획・정비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 2. 고발 처리
① 고발은 서면, 전화, FAX, 이메일, 면담 등의 방법으로 연구・배분기관 접수창구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고발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그룹, 특정부정행위 태양 등 사안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만 접수한다.
③ 연구・배분기관은 위 ②에도 불구, 고발이 익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고발 내용에 따라 실명으로 고발된 사안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고발을 접수한 연구・배분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4-1 조사실시기관」에 따라 조사기관인 연구・배분기관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를 회부받은 연구・배분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한다. 또한「4-1 조사실시기관」에 따라 다른 조사를 수행할 연구・배분기관이 예정된 경우, 고발을 접수한 연구・배분기관은 해당 연구・배분기관에 고발 사안을 통지한다.
⑤ 서면 고발 등 접수창구가 접수하였는지를 고발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배분기관은 고발인(고발인이 익명인 경우는 제외. 단,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발인 성명이 판명된 후에는 실명 고발인으로 처리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 사안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발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한 상담의 경우, 상담 기관이 그 내용에 따라 고발에 준하여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고발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거나 특정부정행위를 요구받았다는 고발・상담에 대하여, 고발・상담을 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발인에 경고하여야 한다. 단 고발・상담을 받은 기관이 피고발인의 소속 연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연구기관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피고발인이 소속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이 경고하려면, 해당 기관은 피고발인의 소속 연구기관에 경고 내용을 통지한다.

3 – 3 고발인・피고발인 처리
① 고발을 접수할 때에는 개인실(별실)에서 면담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창구 담당직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발내용이나 고발인(「3-2 고발 처리」⑥ 및 ⑦의 상담자를 포함한다. 이하 「3-3 고발인・피고발인 처리」에서 같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배분기관은 접수창구에 접수된 고발의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내용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자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연구・배분기관은 조사사안이 누설되었을 경우,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 중이라도 조사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의 책임으로 누설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연구・배분기관은 악의(피고발인을 음해하거나 피고발인이 수행하는 연구를 방해하는 등 오로지 피고발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히거나 피고발인이 소속된 기관・조직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이하 같다)에 근거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실명으로만 고발을 접수한다는 점, 고발에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만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고발인에게 조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조사 결과 악의에 의한 고발이라는 점이 판명되면 이름을 공표하거나 징계처분,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연구・배분기관 내외부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연구・배분기관은 악의에 의한 고발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고발인에게 해고, 강등, 감봉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연구・배분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순히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발인의 연구활동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해고, 강등, 감봉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4 고발 접수에 의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①「3-2 고발 처리」⑥에 따른 고발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상담에 대하여, 고발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에도 연구・배분기관 판단으로 그 사안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학회 등 과학커뮤니티나 보도에 의하여 특정부정행위 혐의를 지적받은 경우, 해당

혐의를 지적받은 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고발이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특정부정행위 혐의가 인터넷에 게재(특정부정행위를 행하였다고 추정되는 연구자・그룹, 특정부정행위의 태양 등 사안의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부정한 행위라고 볼만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된 사항을 해당 혐의를 지적 받은 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고발이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특정부정행위 고발과 관련된 사안 조사
4 – 1.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①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어느 연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오로지 특정 연구기관의 시설・설비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특정부정행위 고발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이 고발 사안을 조사한다.
② 피고발인이 복수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발인이 고발 사안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주로 수행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소속 연구기관이 합동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조사에 참가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연구기관간 사안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피고발인이 현재 소속 연구기관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에 관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현재 소속 연구기관과 해당 연구활동이 이루어진 연구기관이 합동하여 고발 사안을 조사한다.
④ 피고발인이 고발 사안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이직한 경우, 현재 소속 연구기관이 이직한 연구기관과 합동하여 고발 사안을 조사한다. 피고발인이 이직 후 어떤 연구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사안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소속되었던 연구기관이 고발 사안을 조사한다.
⑤ 위 ①부터 ④에 따라 고발 사안을 조사하는 연구기관은 피고발인이 해당 연구기관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⑥ 피고발인이 조사개시 및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시점 둘 다 어떤 연구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조사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배분기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분기관이 조사한다. 이 경우 본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은 해당 배분기관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으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학회 등 과학 커뮤니티, 또 배분기관은 고발 사안과 관련된 연구분야와 관련있는 기관이나 학회 등 과학커뮤니티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3-3 고발인・피고발인 처리」①부터 ③까지 및 「4 특정부정행위 고발과 관련된 사안 조사」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협력하는 기관 등에 준용된다.

4 -2 고발에 대한 조사체제・방법
(1) 예비조사
① 「4 – 1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조사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은 고발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고발된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고발시 제시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의 논리성,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 공표부터 고발까지

의 기간이, 원 데이터, 실험・관찰노트, 실험시료・시약 등 연구성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각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연구기관이 정한) 보존기간을 초과하였는지 등 고발내용의 합리성, 조사가능성 등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아래 (2)②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된 논문 등에 대하여 고발과 관련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철회된 경위・사정을 포함하여 특정부정행위 문제로 조사할 사안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③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 고발된 사안이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고발을 접수한 후 본조사를 실시할지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예를 들어, 30일 이내)을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④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존하고 그 사안에 관한 배분기관 및 고발인의 요청에 응하여 공개한다.

(2) 본조사

① 통지・보고

(가)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기관은, 고발인 및 피고발인에게 본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발인이 조사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기관에도 통지한다. 고발된 사안을 조사할 때에는 고발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관계자 이외의 자 또는 피고발인에게 고발인이 특정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에 관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 본조사 실시사실을 보고한다.

(다) 조사기관은, 본조사 실시 결정 후 실제로 본조사가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예를 들어, 30일 이내)을 해당 조사기관 규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② 조사체제

(가) 조사기관은 본조사를 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절반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조사위원은 고발인 및 피고발인과 직접 이해관계(예를 들어 특정부정행위가 문제된 연구활동이 논문과 같은 성과를 얻어, 특허나 기술이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를 가지지 않는 자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은 미리 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조사기관은 내용을 심사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의와 관련된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통지한다.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관 내 지위는 조사기관이 정한다.

③ 조사방법・권한

(가) 본조사는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에 관한 논문, 실험・관찰노트, 원 데이터

등 각종 자료의 정밀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재실험 요청 등으로 실시된다. 이 때 피고발인의 소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나) 고발된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재실험 등을 통해 재현성 입증을 피고발인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피고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조사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조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되는 기간 및 기회(기기, 경비 등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재현성 입증을 위한 재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위 (가), (나)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정하고 관계자에 공지하여야 한다. 조사권한에 근거한 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하여, 고발인 및 피고발인 등 관계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또 조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기관은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 연구활동
조사의 대상에는,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 외에 조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사에 관련된 피고발인의 다른 연구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⑤ 증거의 보전조치
조사기관은 본조사에 있어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이 수행된 연구기관이 조사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조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에 관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발인의 연구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조사 중간보고
조사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의 예산을 배분하였거나 조치한 배분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 종료 전이라도 조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사시 연구 또는 기술상 정보 보호
조사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공개 전 데이터, 논문 등 연구 또는 기술상 비밀로 하여야 하는 정보가 조사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4 – 3 인정
(1) 인정
① 조사기관은 본조사 개시 후 조사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예를 들어, 150일 이내)을 해당 조사기관 규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 ①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특정부정행위로 인정된 경우 그 내용, 특정부정행위에 관여한 자와 그 관여의 정도, 특정부정행위로 인정된 연구활동에 관련된 논문의 각 저자의 해당 논문 및 연구활동에서의 역할을 인정(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를 통해 고발이 악의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조사위원회는 그 취지를 함께 인정한다. 그러한 인정을 할 때에는 고발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 ②, ③의 인정을 종료한 때 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정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설명책임
조사위원회 조사에 있어서 피고발인이 고발된 사안에 관련된 연구활동 의혹을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연구활동이 과학적으로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논문 등도 그에 근거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여야 한다.
(3) 특정부정행위 여부 인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 (2)에 따라 피고발인의 설명을 듣고 조사를 통해 얻은 물적・과학적 증거, 증언, 피고발인의 자백 등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부정행위 여부를 인정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되 피고발인의 연구체제, 데이터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부정행위 사실 및 고의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피고발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특정부정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특정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고발인의 설명이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특정부정행위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또 피고발인이 원 데이터나 실험・관찰노트, 실험시료・시약의 부존재 등 본래 존재하여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으로 특정부정행위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 없는 사유(예를 들어, 재해 등)로 인하여 위 기본적인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원 데이터나 실험・관찰노트, 실험시료・시약의 부존재 등이, 각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보존기간이나 피고발인이 소속된 또는 고발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을 당시의 소속연구기관이 정한 보존기간을 초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③ 위 (2)의 설명책임의 정도 및 위 ②의 본래 존재하여야 할 기본적 요소에 대하여는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한다.
(4) 조사결과 통지 및 보고
①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속하게 고발인 및 피고발인(피고발인 외 특정부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다. 피고발인이 조사기관 외 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기관에도 해당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② 위 ①에 더하여 조사기관은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 해당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③ 악의에 의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 조사기관은 고발인의 소속기관에도 통지한다.
(5) 불복신청
① 특정부정행위가 인정된 피고발인은 조사기관이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조사기관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기간 내라도 동일한 사유로 불복신청을 반복할 수는 없다.
② 악의에 의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 고발인(피고발인의 불복신청 심사에서 악의에 의

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서 인정은, 위 (1) ③을 준용한다)은, 그 인정에 대하여 위 ①의 예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불복신청 심사는 조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이 때 불복의 취지가 새로운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위원 교체 또는 추가하거나 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른 자에게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조사기관이 해당 불복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변경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부정행위가 인정된 피고발인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위 ③의 조사위원회를 대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5)불복신청」에서 같다)는 불복신청의 취지, 이유 등을 고려하여 그 사안의 재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해당 사안의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기관은 피고발인에 해당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불복신청이 해당 사안의 지연이나 인정에 따른 각 조치의 유예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조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이후 불복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위 ①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고발인에게 선행 조사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제출 등 해당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그 경우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기관은 피고발인에 해당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피고발인으로부터 특정부정행위 인정에 관한 불복신청이 있으면 이를 고발인에게 통지한다. 그에 더하여 조사기관은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도 보고한다. 불복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재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⑥ 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를 둔 조사기관이 규정에 미리 정해둔 기간(예를 들어, 50일)내에, 선행 조사결과를 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기관은 해당 결과를 피고발인, 피고발인이 소속된 기관 및 고발인에게 통지한다. 그에 더하여 조사기관은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 보고한다.

⑦ 위 ②의 악의에 의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의 고발인으로부터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고발인이 소속된 기관 및 피고발인에 통지한다. 그에 더하여 조사기관은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 보고한다.

⑧ 위 ②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해당 조사위원회를 둔 조사기관이 규정에 미리 정해둔 기간(예를 들어, 30일)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보고한다. 조사기관은 해당 결과를 고발인, 고발인이 소속된 기관 및 피고발인에게 통지한다. 그에 더하여 조사기관은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및 문부과학성에 보고한다.

(6) 조사결과 공표

① 조사기관은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② 조사기관은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우너칙적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사안이 외부에 누출된 경우 및 논문 등에 고의가 아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악의에 의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③ 위 ①, ②의 공표하는 조사결과 내용(항목 등)은 조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고발인 및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
① 특정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부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 자 또는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특정부정행위가 인정된 논문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된 저자(이하 '피인정자'라 함)의 소속기관은 피인정자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특정부정행위로 인정된 논문 등의 철회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악의에 의한 고발로 인정된 경우, 고발인이 소속된 기관은 해당자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절 특정부정행위 및 관리책임에 대한 조치
1 특정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 연구기관에의 조치
전 절의 특정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실시 결정 기타 보고를 받은 배분기관 등은, 아래와 같이 그 사안에 관련된 배분기관 등이 해당 조사기관에 사안에 관한 신속한 전면해명을 요청하고 조사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필요한 개선을 요구한다. 배분기관 등은 전 절의 대상이 된 연구활동에서 특정부정행위를 확인하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실시 결정 기타 보고를 받은 배분기관 등은,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가 실시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신속히 사안을 규명하고 조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한다.
② 배분기관 등은 조사 과정 중이라도 조사기관으로부터 특정부정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피인정자가 관련된 경쟁적 자금 등에 대하여 채택 또는 교부 결정 보류, 교부 정지, 관계기관에 대한 집행정지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배분기관 등은 조사기관으로부터 특정부정행위가 인정된 조사결과를 받아 이를 확인한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조치 대상 연구자
・특정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연구에 관련된 논문 등에서 특정부정행위에 관하였다고 인정된 저자(공동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연구에 관련된 논문 등의 저자는 아니나, 해당 특정부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 자
・특정부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특정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연구에 관련된 논문 등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된 저자
(나) 특정부정행위에 관련된 경쟁적 자금등의 반환등
특정부정행위가 인정된 연구활동에 관련된 경쟁적 자금 등에 대하여 배분기관은, 위 (가)의 조치 대상이 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경쟁적 자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운영비교부금이나 사학조성 등 기초적 경비는 특정한 연구활동 또는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기관에 대한 조치로서, 그 관리는 연구기관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기초적 경비 조치에 따라 수

행된 연구활동에서 특정부정행위 관련 연구비 반환 처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 경쟁적 자금 등에 대한 신청 및 참가자격 제한
배분기관 등은 위 (가)의 조치 대상이 된 연구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경쟁적 자금등에 대한 신청 및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경쟁적 자금 배분으로 이루어진 연구활동에서의 특정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경쟁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2005년 9월 9일 경쟁적 자금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이하 '지침'이라 함)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외 경쟁적 자금등에 대한 신청 및 참가자격도 지침에 준하여 제한한다. 또한 기타 연구활동에서 특정부정행위(경쟁적 자금 배분으로 이루어진 연구활동에 관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경쟁적 자금등에 대한 신청 및 참가자격을 지침에 준하여 제한한다.
<<배분기관이 실시하는 사항>>
○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실시 결정 기타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실시할 것
○ 특정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 연구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분기관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배분기관 등이 취한 조치 내용이나 조치 대상이 된 연구자 범위를 경쟁적 자금등의 공모요령이나 위탁계약서(부속자료를 포함한다)등에 기재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응모 또는 계약하도록 할 것
2 조직으로서의 관리책임에 대한 연구기관에의 조치
연구활동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도록하는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조직으로서 책임체제를 명확히하여 연구활동에서 부정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이나 체제 정비를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 및 배분기관은 조직으로서 연구기관의 관리책임이 이행될 수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연구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1) 조직으로서의 책임체제 확보
① 관리조건 부여
문부과학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겨우 연구기관에 대하여 체제정비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 및 그 이행기한을 명시한 관리조건을 부여한다. 또 문부과학성은 관리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확인한다.
(가) 「제5절 2 이행상황조사 실시」에서 제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이행상황조사 결과, 체제정비 등이 미비하다고 확인된 경우
(나) 연구활동에서 특정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기관에서 체제정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② 간접경비 삭감
문부과학성이 관리조건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관리조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경쟁적 자금의 배분기관은 그 연구기관에 대한 경쟁적자금의 다음 연도 이후의 간접경비 조치액을 일정 비율 삭감한다. 간접경비 조치액의 삭감비율은 문부과

학성 확인 결과에 따르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그 상한은 간접경비조치액의 15%로 한다. 간접경비조치액의 삭감비율 기준은, 문부과학성이 별도로 정한다.

③ 배분 정지

간접경비를 상한까지 삭감하는 조치를 결정한 뒤에도 문부과학성이 관리조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쟁적 자금 배분기관은 그 연구기관에 대한 경쟁적 자금 배분을 정지한다. 또 위 ①부터 ③까지의 조치 해제는 이하에 따른다.

・ ① 조치는, 연구기관에서 관리조건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시점에, 문부과학성이 해제한다.

・ ② 조치는, 연구기관에서 관리조건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관리조건 이행이 진전되었다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경우, 배분기관이 그 다음 해에 해제한다.

・ ③ 조치는, 연구기관에서 관리조건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관리조건 이행이 진전되었다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시점에, 배분기관이 해제한다.

(2) 신속한 조사 확보

경쟁적 자금 배분기관은 해당 경쟁적 자금 배분으로 이루어진 연구활동에서 특정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기관의 조사가 지연되면 해당 경쟁적 자금의 다음 해 이후 1년간 간접경비 조치액을 일정비율 삭감한다. 간접경비 조치액의 삭감비율의 상한은 간접경비조치액의 10%로 하고, 배분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배분기관이 실시하는 사항>>

○ 조직으로서의 관리책임에 대한 연구기관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분기관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배분기관이 취한 조치의 내용을 경쟁적 자금의 공모요령이나 위탁계약서(부속자료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하여 연구기관이 이를 미리 숙지하고 응모 또는 계약하도록 할 것

3 조치내용 공표

문부과학성 및 배분기관 등은 위 1, 2에 열거한 조치를 결정한 때 이를 신속히 공표한다.

제5절 문부과학성의 조사와 지원

1 연구활동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계속적 대응

문부과학성은 전문가에 의한 검토의 장을 마련하여 본 가이드라인 실시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한다.

2 이행상황조사 실시

문부과학성은 각 연구기관의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제정비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이행상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이행상황조사는 서면, 면접 또는 현지조사나 이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이행상황조사 결과, 체제정비 등이 미비하다고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대하여 관리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도・조언한다.

3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문부과학성은 일분학술회의나 배분기관과 연대하여 표준적인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재 제작을 추진한다. 연구현장의 실정이나 연구활동의 다양성, 연구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4 연구기관의 조사체제 지원 특정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연구기관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구기관에 적시에 조언하거나 일본학술회의나 배분기관과 연대하여 전문가를 선정・파견하는 등 조사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제재처분 사례

□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사례

❍ 연구기관: 도쿄대학[56]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논문 내 그림을 위조, 조작 및 증거인멸)
- 조치내용: 징계해고, 연구비 반환, 논문철회,
- 경위 및 배경: 2012. 10. 10. 모리구치 히사시(森口 尚史)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 특임연구원에 의해,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iPS세포로부터 유도된 심근세포이식을 최초로 인간에게 실시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은 이를 즉시 부인하였고 모리구치 히사시의 허위 발표에 대하여 각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함. 이에 도쿄대학은 모리구치 히사시가 소속된 병원 및 연구센터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연구행동규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안을 조사 · 심의함.
- 모리구치 히사시가 데이터, 실험노트,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전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입증방해’에 해당되고, 논문의 그림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조치함

❍ 연구기관: 홋카이도대학[57]

- 배분기관: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논문 내 그림을 위조, 조작)

56) https://www.u-tokyo.ac.jp/focus/ja/press/p01_250920.html

57) https://www.jst.go.jp/osirase/2023/20240222.html

- 조치내용: 연구비 반환(연구비, 간접경비 및 지연손해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부에 대한 신청 자격 제한(직접당사자 2023. 11.~2031. 3., 연구책임자 2023. 11.~2027. 3.)

- 경위 및 배경: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선도적 물질변환영역(ACT-C, 2012년~2017년),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CREST, 2011년~2017년)]으로 수행된 연구논문 4건에서, 그림의 위조·조작이 대학에 의해 밝혀짐.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사안을 확인한 다음, 부정행위에 관여한 직접당사자(특임조교)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 교수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조치함

❍ 연구기관: 나고야대학[58]

- 배분기관: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제재사유: 연구부정행위(논문 내 그림을 위조, 조작)

- 조치내용: 연구비 반환, 과학기술진흥기구 사업 전부에 대한 신청 자격 제한(대학원생 2021. 4.~2023. 3., 연구책임자 2021. 4.~2022. 3.)

- 경위 및 배경: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CREST, 2016년~2020년)]으로 수행된 연구논문 1건에서, 그림의 조작이 대학에 의해 밝혀짐.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사안을 확인한 다음, 부정행위에 관여한 직접당사자(대학원생)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 교수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조치함

□ **부정사용 등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표29>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사례

연구기관	부정사용 등 행위 사례	조치내용
야마구치대학	10년 동안 소모품 허위 발주	연구비 반환(971만엔) 신청자격 정지 2~5년
나고야대학	2년 동안 소모품 허위 발주	연구비 반환(946만엔) 신청자격 정지 4년
아이치현 암센터	5년 동안 허위 청구서 작성	연구비 반환(775만엔) 신청자격 정지 1~4년
히로시마대학	5년 동안 허위 청구서 작성	연구비 반환(442만엔) 신청자격 정지 1~4년

58) https://www.jst.go.jp/osirase/2020/20210309.html

도쿄대학	3년 동안 허위 청구서 작성	연구비 반환(218만엔) 신청자격 정지 1~4년

라. 소결

일본은 연구부정행위에 더하여 부정사용 등 행위도 제재처분 사유로 규정하여 연구비 신청자격 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데, 문부과학성 등 정부부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59]해두었으나 부정사용 등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에 따르는지, 다른 절차가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59) 2014년 문제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영향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제4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

2021. 1. 1. 제정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마련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법 제7조 제1항 제3호),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열거하고(법 제31조 제1항), △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관련자가 부정행위 기타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부터 제34조).

혁신법상 제재처분 제도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상 제재처분 제도와 비교하여 그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부정행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하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를 제재처분을 받는 행위 유형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행위로 분류하였다(동 규정 별표 4의2). 반면 혁신법은 위·변조 및 표절등과 같은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의 관리, 인간·동물 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58조 등)[60]

둘째, 제재처분의 대상을 연구윤리위반행위 외에도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또는 정산 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제재 사유로 하는 한편, 위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하에서는 제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기지급한 정부출연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비를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1조의2, 제11조의3), 혁신법 하에서는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원칙적인 제재 수단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환수 처분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참여제한의 대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

60)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2쪽

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하였으므로, 참여제한 처분 당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신청 이외의 국가연구개발 관련 활동에의 참여 역시 제약하지 않았다. 반면 혁신법이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의 참여'는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외에도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배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참여 및 각 중앙행정부처가 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등에의 참여 및 활동을 포함한다.

나. 국제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제재처분

□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유형[61]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정부부처,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그 추진 유형은 크게 △ 일반형 △ 공동기관형 △ 별도과제형으로 구분된다.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지급받으며, 전문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공동기관형 : 해외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혁신법령 등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

- 별도과제형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연구내용상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과제를 별도의 연구개발예산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각자 해당국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함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해외기관은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에게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62] 2024. 2. 6. 혁신법

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24. 2.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쪽 이하를 발췌하여 정리함

6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74호) 개정 이유 참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기관형’ 연구개발과제가 가능해졌다.

즉 종전에는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른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을 뿐이었다면, 개정된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기관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혁신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 및 전문기관에 대해 직접 부담하게 된다.

□ 공동기관형 연구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와 책임

혁신법령상 외국에 소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성과물 실시 지원(시행령 제32조 제2항), 연구 보안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45조), 국제공동연구 수행자에 대한 3책5공제의 특례(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 국내기관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일부 두고 있기는 하나, 해외기관, 단체 또는 연구자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다.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간접비 비율의 특례를 인정하거나 외국 정부, 기관, 단체가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7조 제2항, 제116조).

즉, 일반형 또는 별도과제형으로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혁신법에 따른 규율 대상이 아니고,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혁신법령상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국내기관과 동일하게 부담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는 국내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첫째, 해외기관은 혁신법 제3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저자의 부당표시행위 외에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연구개발 성과의 무단 소유, 보안 관련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였다면, 국내의 기준과 충돌하더라도 이를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해외기관 및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처분 대상이 된다.

2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집행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 조사 권한의 한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의심 사실이 발견, 접수되면, △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제31조 제3항), △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나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제33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등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등 처분의 근거 사실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충분하고 심도깊은 조사를 거쳐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기관의 경우 자체 검증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아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언어적 문제 등으로 현장조사 등에 한계가 있어,[63]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기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유무, 귀책 대상자 등을 판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제재부가금 등 징수의 어려움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63) 위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25쪽 참조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혁신법 제34조 제2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세징수법 제3장에서는 강제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다.

- 재산의 압류(제31조~63조) :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제수색, 질문과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압류대상재산이 특정되면, 부동산의 압류는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으로,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직접 점유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압류는 그 압류의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압류재산의 매각(제64조~제93조, 제103조) :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공매는 경쟁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청산(제94조~제102조) : 매각대금을 징수대상금액과 그밖의 채권에 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배분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처분대상자(강제징수 대상이 된자)에게 지급한다.

행정 제재수단 중 금전적 제재수단은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한 수단이 발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는 납부의무자 및 그 의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청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과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에서는 처분에 응하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강제징수 절차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역외적용 사례 및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자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및 물건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소위 '역외적용' 개념이 일부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경쟁사인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대법원은 2023. 4. 1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음(2020두31897 판결)[64]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페이스북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대하여 약 67억원의 과징금 및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2. 9. 14. 이용자가 제3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남긴 행태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이 중 2020년도에 부과한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2023. 10.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2021구합57117 판결), 그 외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

현재의 역외적용 법리는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법 적용을 통한 처분 집행력 확보에 관한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례들 역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처분의 실질적 강제가 가능하거나 자진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수단(명단공표, 서비스 정지 등)이 병행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참고 선례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는 금지되거나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는 행위가 해외기관의 법제나 규정 하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연구성과물을 소유하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지, 발명자 소속 기관이 소유하는 사용자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인지에 따라 연구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자가 소유, 처분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R&D 관련 제재 사유 및 종류 등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위조, 변조, 조작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별도의 규정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협약 또는 계약에 근거한 민사적 조치의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보조금에 대한 사기 행위로 인정될 때 형사적 조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혁

64) https://www.lawtimes.co.kr/news/186813?serial=186813

신법과 같이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연방법률의 통제 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의 인정 범위 역시 위조·변조·표절로 정하고 있어, 위조·변조·표절 외에 저자 부당 표시까지 연구부정행위로 규율하는 혁신법과 차이를 보인다. 반면 영국의 UKRI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고의·중과실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등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법제도 및 연구문화의 차이는 혁신법에 따른 제재 처분 결정시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는 있다"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가 우리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위반시 제재를 받는 부정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제재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시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별 법제도 및 R&D 환경의 차이는, 연구자에게 허용된 자율성 및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나.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492 판결

□ 사안의 배경 및 판단 요지

해당 사안은 미국 텍사스 소재기업이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기개발품을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인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처분을 받은 기업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 국내기업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의 당사자일 뿐 전문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직접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기개발품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 전문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기관과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입력, 제출한 이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관계자는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 연구개발과제의 기개발품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 원고, 즉 해외기업은 제재처분의 역외적 효력 인정 여부 등을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법문의 해석상 협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다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이후, 실제 환수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이 환수금은 미납 상태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 위 사례의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제에 참여한 해외기업에게도 국내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을 받은 원고 기업은 국내 전문기관 또는 정부부처와 직접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다만 국내기업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직접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였고, (ii)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국내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인지, 동의하였으며, (iii) 처분 법령이 '협약'의 체결 당사자일 것을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위 판례가 처분의 집행력 확보를 통한 실효성에 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그에 따른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전제 사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해외기관은 자신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라는 사실 및 그 재정지원과 관련한 대한민국 법령 준수의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의무 또는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해외기관이 국내법 및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면, '협약'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절차를 통해 해외기관이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3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

가. OECD의 국제공동연구 연구부정행위 조사 가이드라인

OECD 산하 Global Science Forum은 「Investigating research Misconduct Allegations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A Practical Guide (2009)」를 작성하였다. 연구가 점점 다국적화되면서, 이는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국가간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국제공동연구 협약에 연구의 모범사례를 촉진하고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에 대한 원칙,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반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권고사항과 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국제공동연구 협약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 가이드 적용을 위한 협약상 상용구 제안
  : "본 실무가이드에 정의된 연구 진실성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참여 당사자국의 법률, 주권을 존중하면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즉시 통보되고 조사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 "조사의 결론을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수용하고 절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하여 (i) 책임감있는 연구 관행 장려, (ii) 국내 법률의 준수, (iii)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표준 절차, (iv) 전파에 관한 내용이 계약상 합의되어야 함

❍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주요 원칙

- 조사가 수행되는 국가의 국내 법률에 부합하여야 하고, 중복되는 규정과 행정·민·형사상 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야 함

- 조사는 상호합의되고 표준화된, 명확히 정의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투명성과 무결성, 공정성 그리고 기밀 유지에 관한 최고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불이익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함

  (i) 무결성: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면서도 정확성, 객관성, 철저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이해상충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함. 절차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ii) 공정성: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혐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답변, 질문, 증거 제시, 증인신청 등에 관한 절차가 허용되어야 함. 증인이 지정한 사람을 동반하거나 조언 및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iii) 기밀성: 조사와 관련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는 가능한 기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혐의 조사, 건강 및 안전 또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해지치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함. 가능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공개는 기밀로 이루어져야 함. 조직 및/또는 직원이 제3자에게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적당한 시기에 의무를 이행되어야 함.

  (iv) 불이익 금지: 혐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 연구부정행위로 고발되어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됨. 누구도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악의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v) 균형 잡힌 접근: 조사자는 조사의 목표는 혐의의 진위 파악임을 고려하여 신원 공개와 기밀 유지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함. 평판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

-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정책,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래와 개념과 권장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i) 적절한 구조를 갖출 것 : 우려사항 및 혐의 접수, 참여,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ii)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의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합의된) 정의를 포함할 것

(iii)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명확한 순서를 제공할 것

(iv) 조사 및 의사결정 단계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소요기간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 : 조사와 판단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제재조치는 위반행위에 비례하고 일관적이어야 함

(v) 보고 및 배포 요건을 설명할 것 : 보고를 위한 일반적 형식과 적절한 권장사항, 소요 기간, 보고서 제공 대상 및 조직, 해당 국가기관이 보유한 연구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지, 연구기록 수정을 위한 후속 조치 단계 등

❍ 커뮤니케이션 전략

- 각 계약에는 연구 거버너스를 촉진하고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정책,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프로젝트 규모 및 범위에 부합하게 구현하여야 함

(i) 정보 접근성: 우려사항 보고 또는 내부고발을 위한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혐의를 조사하는데 쓰이는 절차, 연구 수행에 관한 기준

(ii) 맞춤형: 연구가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 활동 분야의 프로필 및 프로젝트 규모

(iii) 정보 적합성: 전문 용어로 작성 또는 제공되지 않고 정보가 필요한 일반인에게 제공될 것,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연구에 관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될 것

(iv) 인식 및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합의된 연락 창구,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합의된 메커니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합의된 절차, 필요한 경우 조사가 징계 및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

(v) 국가 또는 고용주가 연구수행 기준 또는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를 채택할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활동의 규모 및 규모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전파하여야 함

❍ 공동연구계약에 ‘연구부정행위 혐의조사에 관한 원칙, 기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

며, 제재조치가 위반 행위에 비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출신 국가나 고용주와 관계없이 개인에 비례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장 사항이 제시됨

위 가이드라인은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R&D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 연구부정행위 혐의 제기시의 조사 절차의 수립, △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제재 조치시 준수해야 할 원칙, △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항목, △ 이러한 원칙과 기준, 절차에 관한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조사 단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문제점

해외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 논의의 시작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유무 및 그에 대한 책임 당사자, 부정행위 발생 경위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재 사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 전문기관이 해외 연구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기타 위법행위 가능성을 직접 조사하고자 하더라도 시간, 장소 및 언어 등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전문기관의 조사가 다분히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오히려 귀책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 조사 절차의 실질화 방안 제안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및 책임 판단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 부정행위 혐의 또는 발생시 처리 절차 및 방안에 관한 상호 합의

해외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할 협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 따른 제재 처분 혐의가 제기되거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 및 조치 방안에 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준거법 등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법률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표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는 계약 문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대안적 조사 절차의 도입 필요성

2024. 2. 배포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영문 양식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며,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따를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만, 지리적 한계와 실효성 있는 감독 수단의 부재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협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자 소속 기관의 조사 검증 절차 이행 요구 등에 관한 사항

도입을 고려할만한 조사절차로는 해외 연구자 소속 기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 혐의 발생시 이를 스스로 조사, 검증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보고할 협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 부정행위 혐의 발생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요구, △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 △ 전문기관의 조사 과정 공유 및 자료 제공 요구 권한, △ 부정행위 발생시 처리 절차 및 방안 등이 협의되고 협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재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방안

□ 문제점

제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i) 처분 절차의 적법성, (ii) 처분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 (iii) 처분 이후 실효적인 이행강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분 절차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의 효력 등이 주로 문제가 되어 왔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은 (i)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i)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iii)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국제공동연구의 처분 대상자는 그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해외에 있고, 원활한 연락 내지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분청의 각종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유효하게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자체적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의 해외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줄 필요도 있다.

□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여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송달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5조).

이와 같은 송달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요건은 사전통지와 처분 확정 통보 모두에 적용된다. 즉 사전통지와 처분통보 중 어느 하나라도 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 단계에 관련한 문서의 송달 방법 및 주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 본 협약에 근거한 각종 통지, 안내, 통보 등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지, △ 수령인을 지정한다면 해당 수령인의 이메일 주소, △ 협약상 수령인 또는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문서 통지, △ 본 협약 또는 그 이후 변경 협약이나 통지를 통해 지정된 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그 문서의 발송으로서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 등이 있을 것이다.

라. 제재 처분 사유의 적용과 관련한 고려 사항

□ 제재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처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체적 측면에서 제재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i) 처분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ii) 처분 사유의 양정을 다투는 경우(재량권의 일탈·남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처분 사유의 존재와 관련하여서는 그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그 처분사유의 존재는 행정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처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에 관련된 사항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별로 R&D 관련 제재 대상 행위 유형이나 해석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혁신법상 금지되는 부정행위의 유형 등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고, △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인지하고 준수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받고, △ 제재처분의 심의 및 검토 과정에서 귀책 대상자, 귀책의 범위, 그밖에 고려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 전문기관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처분 사유의 심의 단계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가 제시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 혁신법상 제재처분 사유별 고려사항

법원의 판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은 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상 중요한 실무 해석 기준이 된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적 판단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은 제재처분에 관한 조사 및 심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서 국제공동연구 특수성을 제재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외기관 역시 국내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각 협력 국가별 법

제 및 사업 운영 체계의 특성 등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대표적인 제재사유별로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연구부정행위(제31조 제1항 제1호 관련)

혁신법은 위조, 변조, 표절 외에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모두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 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유형 및 관련 규정/매뉴얼의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여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토록 하는 외에, △ 연구부정행위 혐의로 제재 여부 및 양정 등을 정해야 하는 경우,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해당국 법령 및 규정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그 법령 또는 규정상 시정 조치 기회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 인정 또는 검증 후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나아가 연구개발비의 편취 또는 유용 등 사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 가능성 및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제31조 제1항 제2호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매우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 · 기관 · 단체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 · 기관 · 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116조).

만약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파악되는 경우, 제재 처분의 당위성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타당성 사이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그 행위의 본질이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사기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재 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사적 절차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로는, △ 연구개발비의 종국적인 사용 목적과 용도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인정되는지, △ 국가별 또는 기관별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아닌 부적정 집행으로서 정산 후 회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단순한 정산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후 회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 적정성 검토가 자칫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준의 기계적 적용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관계를 경직시키지 않으려면, 해당 국가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전문기관 또는 소관 부처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거나 공모하는 단계에서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게끔 유도할 필요도 있다.

❍ 연구개발성과의 무단 소유 (제31조 제1항 제3호 관련)

혁신법은 (i)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제16조 제1항), (ii)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6조 제2항). (iii)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창출한 것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 창출한 것으로 기여도 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한 비율로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한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 간 또는 연구개발기관 상호간의 계약과 합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혁신법에 정한 사항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차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내지 소유권등 권리이전청구권 등 민사 분쟁 절차를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사후적 책임 추궁 수단인 제재 조치 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 △ 사전적으로는 해외연구개발기관의 해당국 또는 기관의 IP 소유권 등 권리 귀속 기준과 절차,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리 귀속 및 이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유도하고, △ 그 협약 또는 계약된 바에 따라 권리가 귀속 또는 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관리가 필요하다.

마. 제재 처분 이후 이행강제의 실효성 확보 과제

처분 이후 이행강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재부가금 및 환수와 같은 금전적 제재 처분이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인정되지만, 이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직접 그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i) 법령이 근거한 제재처분이 아닌 협약상 회수 조치를 통해 민사 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해 해외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방법,[65] (ii) 공표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 압박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66] 그러나 협약상 회수 조치를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민사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그와 같은 소송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특정,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의 실효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추천할만한 대안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표 제도 역시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 자발적 반납 이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납부금액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회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재부가금 및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제재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 교육, 연구개발 수행 과정의 수시 점검 및 보고, 연구개발비 예산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협약 및 서식의 정비 필요성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상 협약 서식

현재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식은 아래와 같다.

- 연구개발계획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65) 민사집행법 제26조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별로 현지 사법 체계 내에서 국내 민사 판결로 해외에서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다만 해외에서의 강제집행 가능성 및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막대하고 집행재산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활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임

66)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행정공조체계를 마련하는 예시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조세 관련 정보 교환 및 징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등이 있으나, R&D에서의 국가별 제도 다양성 및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처분에 관하여 위와 유사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및 샘플
-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 보안서약서 샘플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샘플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 윤리 실천 서약서 샘플
-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샘플
-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서

이 중 전문기관이 직접 해외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인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이 동일하며, 영문과 국문 버전이 있을 경우 국문 버전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부가조항(제27조)만이 추가되어 있다.

□ 제재처분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 협약 체결 전 단계

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혁신법령 및 규정 이해를 돕고 그 준수 및 불이행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영문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협약서식에서도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하므로, 법령 및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협약 체결 절차 이행에도 도움이 된다.

❍ 협약 단계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감독상 특수성을 고려한 조문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약서식은 과제별로 둘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공통 서식을 두되, 해당 과제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약 또는 특약사항에 반영할만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재 사유, 대상 및 제재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의 합의(또는 혁신법령에 따른 제재사유, 대상 및 제재 기준에 대한 동의)
-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사실 발생시의 조사 및 검증 절차
- 관련 자료의 제공 협조 기타 조사 및 검증에의 협력 의무
- 제재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통지 및 통보 사항에 관한 송달 방법
- 개별 제재사유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

4 맺음말

국제공동연구의 성공적 추진은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력 관계의 구축 및 파트너쉽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의 확보와 이를 강행할 수 있는 집행력 못지 않게, 쌍방의 R&D 법제와 윤리, 연구문화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 영, EU 등 주요 기술선진국은 기본적으로는 연구자 자율성에 기초한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의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이와 같이 상호 다른 법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R&D 시스템 이해를 기반으로 협약 등 상호 합의에 기반한 부정행위 발생시 조사 및 검증, 후속 조치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전문기관이 주체가 되어 대행하는 부정행위 조사, 심의 및 제재 처분 절차가 해외 기관에 대해 적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제재 사유의 적용, 심의 및 처분 절차의 재정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별다른 차별점 없이 제시되어 있는 각종 서식이나 법령, 매뉴얼 등을 국제공동연구의 특성과 내용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 적용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별첨 목록

<별첨1> 부정청구법(False Claim Act) §3729, §3730

<별첨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통령실 연방정책(65 FR 76260-76264)

<별첨3> 연방규정(DOE, CFR-2024-title10, §733)

<별첨4> 연방규정(DOE, CFR-2024-title10, §600.31)

<별첨5> DOE 규정(DEAR 952.235-71)

<별첨6> 연방규정(HHS, CFR-2023-title42, §93)

<별첨7> 연방규정(NSF, CFR-2023-title45, §689)

<별첨8> UKRI 표준 보조금 약관(RGC)

<별첨9> UKRI 사기 및 뇌물 방지 정책

<별첨10> UKRI 우수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별첨11> EU General Model Grant Agreement EIC Accelerator Contract

<별첨12> Regulation(EU, Euratom) 2018-1046

<별첨13> Regulation(EU, Euratom) 2988-95

<별첨14> EU GENERAL MULTI-BENEFICIARY MODEL GRANT AGREEMENT

<별첨15> EU the Implementation of Grant Contracts - A Users' Guide

<별첨16>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일본 내각부)

<별첨17>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 문부과학성)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